



---

#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연구·검토 결과 보고

---

2021. 9. 8.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

## I.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진행 개요

### 1. 진행 경과

- 제1차 회의: 2020. 1. 17.(금)
- 제2차 회의: 2020. 2. 7.(금)
- 제3차 회의: 2020. 3. 30.(월)
- 사법행정자문회의 제5차 회의 보고: 2020. 4. 9.(목)
  - 검토 중인 세 가지 방향의 개선방안 기초 연구·검토 경과보고
  - 국민과 법조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검토 및 향후 계획 보고
- 제4차 회의: 2020. 4. 21.(화)
- 제5차 회의: 2020. 5. 26.(화)
- 제6차 회의: 2020. 6. 23.(화)
- 제7차 회의: 2020. 7. 14.(화)
- 사법행정자문회의 제8차 회의 보고: 2020. 9. 24.(목)
  - 검토 중인 세 가지 방향의 개선방안 심층 연구·검토 경과보고
  -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 중간보고
    -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경과보고
    - 국민 일반 및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경과보고



▣ 제8차 회의: 2020. 11. 10.(화)

▣ 제9차 회의: 2020. 12. 11.(금)

▣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1차 회의 보고: 2021. 1. 4.(월)**

●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1차 회의(2021. 1. 4.) 자문의견

▣ 국민과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결과를 반영한 세 가지 상고제도 개선방안으로서, 상고심사제 방안, 고등법원 상고부와 상고심사제를 혼합하는 방안,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대법관 증원 포함) 방안을 보고받음

▣ 상고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한 후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로 하여금 토론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그 의견 수렴 결과까지 충분히 참고하여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추가 연구·검토를 실시한 뒤 이를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 제10차 회의: 2021. 2. 15.(월)

▣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2차 회의 보고: 2021. 3. 11.(목)**

●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2차 회의(2021. 3. 11.) 자문의견

▣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하여, 토론회 또는 공청회, 추가 인식조사, 유관기관 의견조회 등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함. 다만, 이른바 공론화 방식의 의견수렴은 그 역할과 기능, 효율성, 감염병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실시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제11차 회의: 2021. 4. 29.(목)

▣ 제12차 회의: 2021. 5. 21.(금)

● 상고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와 병행하여 실시

▣ 제13차 회의: 2021. 6. 22.(화)

▣ 제14차 회의: 2021. 7. 27.(화)

▣ 제15차 회의: 2021. 8. 17.(화)



## 2.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연구·검토의 단계

### ■ ① 기초 연구·검토 및 각 위원의 의견 1차 수렴

- 운영지원단에서 별도로 준비한 방안이 아닌 각 위원들이 직접 준비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순차로 청취한 뒤 이를 ① (가칭) 상고수리·허가제 방안, ② 고등법원 상고부 방안, ③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대법관 증원 포함) 방안으로 유형화함

### ■ ② 심층 연구·검토 및 위원 간 상호 토론

- 세 가지 유형의 개선방안에 관한 위원들 간의 질의응답 및 토론을 통하여 각 방안별 세부 사항, 방안의 명칭 등에 관한 심층 연구 및 검토 실시

### ■ ③ 각종 의견수렴 실시

- 기초 연구·검토 및 심층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를 알리는 활동(전문가세미나, 좌담회 등)을 함과 동시에 국민과 법률전문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폭넓은 인식조사 실시

### ■ ④ 종합 토론 및 사법행정자문회의 보고(2021. 1.)

- 국민과 법률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후 위원 사이에 종합토론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11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함

### ■ ⑤ 추가 의견수렴 실시

-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의견에 따라 추가 의견수렴(토론회, 추가 인식조사, 유관기관 등 의견조회) 실시

### ■ ⑥ 2차 종합 토론 및 사법행정자문회의 보고(2021. 9.)

- 추가로 실시한 의견수렴 결과까지 확인한 뒤 종합토론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15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

### 3. 상고제도 개선과 관련한 각종 의견수렴 실시 경과

#### □ ① 전문가 세미나

##### ● 일시 등

- 2020. 8. 15. 법률방송TV채널 방영

##### ● 내용

-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방안 등에 관하여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민홍기 위원, 정선주 위원)이 참여한 전문가 세미나 실시

##### ● 전문가 세미나 방영 모습



#### □ ② 좌담회

##### ● 일시 등

- 2020. 9. 14. 법률신문 게재

##### ● 내용

- 민홍기 위원, 심정희 위원, 이인호 위원이 법률신문의 좌담회에 참여하여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활동 상황, 주로 논의되는 세 가지 개선 방안에 관하여 대담 실시

● 좌담회 모습



▣ ③ 국민 일반 및 법률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 일시

- 2020. 9. ~ 10.

● 내용

- 국민 일반 1,135명, 법률전문가(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1,518명을 대상으로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인식조사 실시
- 국민 일반은 소송 유경험자와 소송 무경험자, 상고심 경험자와 상고심 무경험자 등을 할당하여 표본을 추출함

● 주요 결과(상세 결과는 별지 1 참조)

- 국민 일반 조사 결과(가장 선호하는 개선 방안)



		상고심사제 방안	고법 상고부 등 방안	대법원의 규모 확대 방안
전체		33.9%	44.2%	21.9%
소송 경험	경험 없음	42.1%	37.3%	20.6%
	있음	전체	45.8%	22.1%
		상고심 경험자	31.1%	46.6%

- 법률전문가 조사 결과(가장 선호하는 개선 방안)

		상고심사제 방안	고법 상고부 등 방안	대법원의 규모 확대 방안
전체 응답자		55.4%	16.1%	28.5%
직역	판사	74.5%	12.0%	13.5%
	검사	47.0%	19.3%	33.7%
	변호사	19.9%	24.8%	55.4%
	법학교수	43.3%	15.6%	41.1%
각 직역별 응답자 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의 환산 수치 <sup>1)</sup>		46.17%	17.92%	35.92%

▣ 4 [추가 실시 사항] 상고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대법원 재판 제도, 이대로 좋은가? - 상고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

● 일시

- 2021. 5. 21.(금)

● 방식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참석은 제한된 인원만 허용하되, Zoom 프로그램

1) 직역별로 응답 대상자를 사전에 정하거나 할당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전문가에게 설문조사에 응답해 줄 것을 요청하여 실제 응답이 이루어진 자료를 그대로 취합한 것임. 다만, 취합 결과 각 직역별 실제 응답자 수에 차이가 있는바, 4개 직역의 응답자 수가 만약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선호하는 방안을 환산한 수치를 별도로 계산한 것임



램과 YouTube를 통하여 국민 누구라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200여명의 전문가와 시민이 사전 신청을 하고 Zoom 온라인 화상회의방에 접속하여 참여. YouTube 채널 실시간 중계 최다 동시 접속자 수 379명

● 내용(토론회 상세 내용은 별지 2 참조)

시간	프로그램
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말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li> <li>○ 환영사: 이현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li> <li>○ 축 사: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li> </ul>
주제발표	<b>주제발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장: 권오곤(한국법학원장, 전 ICTY 부소장)</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lt;제1주제 발표&gt;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노력의 경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노수(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lt;제2주제 발표&gt;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방안: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논의를 중심으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인호(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li> <li>○ 심정희(국회사무처 이사관)</li> <li>○ 민홍기(변호사)</li> </ul>
휴식	
토론	<b>토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장: 권오곤(한국법학원장, 전 ICTY 부소장)</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지정토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상익(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li> <li>○ 김종우(대전지방법검찰청 부장검사)</li> <li>○ 김관기(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li> <li>○ 심석태(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전 SBS 보도본부장)</li> <li>○ 성창익(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li> </ul>
	<b>종합토론(Web 질문 포함)</b>

● 토론회 모습



☐ ⑤ [추가 실시 사항] 범조출입기자 및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대상 추가 인식조사

● 일시



- 2021. 7.

● 내용

-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1차, 제12차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국민 일반 및 법률전문가에 대하여 법조출입기자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추가 인식조사 실시
- 법조출입기자 18명,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315명 응답

● 주요 결과(상세 결과는 별지 3 참조)

	상고심사제 방안	고법 상고부 등 방안	대법원 규모 확대 방안
법조출입기자	66.7%	16.7%	16.7%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24.8%	22.5%	52.7%

▣ ⑥ [추가 실시 사항] 유관기관 등 의견조회

● 일시

- 2021. 7.

● 내용

-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1차, 제12차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상고제도 개선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또는 평소 상고제도 개선 논의에 관심을 둔 시민단체, 경제단체, 소비자단체 등 각종 사회단체 총 51개 기관에 의견을 조회함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의견조회 대상 기관(총 51개 기관)

구분	단체명
유관기관	법무부, 대검찰청, 헌법재판소, 법제처,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한국법학원,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리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사회, 법률 분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바른사회시민회의, 법률소비자연맹
경제 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노동 단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비자 단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
여성 단체 등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교육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변호사 단체	한국여성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舊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법조인협회, 대한법조인협회
기타	한국YMCA, 한국YWCA,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녹색연합,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연맹

● 회신 기관(12개 기관)

- 위 대상 기관 중 12개 기관(대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대한법무사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 의견을 회신함
- 각 기관 및 단체에서 회신한 의견은 **별지 4** 참조

## II.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검토 결과

### 1. 구체적인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의견 도출 방식

- ▣ ① 운영지원단에서 특정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위원들 각자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하여 제시함

- ② 인식조사, 토론회, 유관기관 의견조회 등 각종 의견수렴 결과를 참고하고 위원 간 상호 토론을 거치면서 위원들이 기존에 제시한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의 모습을 일부 수정 및 보완함
- ③ 위원 간 심층 논의를 통하여 실현 가능한 개선 방안의 형태를 세 가지로 유형화하고(이 과정에서 종래 각기 별도의 방안으로 취급된 개선 방안이 결합된 형태의 수정안이 제시되기도 하였음), 종합 토론을 통하여 위원들 각자가 그중 어떠한 방안을 지지하는지 최종적인 의견을 밝힘

## 2. 세 가지 개선 방안의 주된 내용 및 연구·검토 결과

### 가. ① 상고심사제 방안 ⇨ 위원 11명 중 7명 찬성

#### ■ 주요 내용

- 상고의 유형을 법정상고와 심사상고로 세분화하고 적법한 상고이유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대법원이 보다 근본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사건에 심리를 집중하는 방안
- ① 상고허가제의 전면적 도입과 달리 일정한 경우 대법원이 반드시 본안 심리를 해야 하는 상고 유형(법정상고 사건)을 별도로 두고, ② 상고이유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는 ‘본안 절차’에 앞서 당해 상고사건이 법이 허용하는 상고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본안 전 심사 절차’를 명확히 구별함

#### ■ 위 방안을 지지한 위원들의 주된 논거

- 위 방안을 지지한 위원(7인): 이현환 위원장, 강정화, 김태천, 박찬석, 서보학, 이인호, 정선주 위원(가나다 順)
- 현행 법체계상 상고심은 법률심인바, 대법원은 통일된 법령 해석과 법적



기준 제시가 필요한 사건을 집중 처리함으로써 온전한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됨. 이 방안이 상고제도의 본질과 목적에 부합하고 저비용·고효율의 결과를 창출할 수 있음. 비교법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주요 외국의 최고법원 중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많은 사건을 다루는 국가는 사실상 거의 없음

- 인식조사 결과 등을 보더라도 심급제도에 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고, 상고심사제에 관한 동의율이 전반적으로 높음
- 현재 우리나라의 법관 수,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대법관이나 대법원 판사를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대법관이나 대법원 판사가 늘어나게 되면 그에 부수하는 인력, 시설 등도 증가하게 되는데 그러한 사법자원은 사실심 충실화를 위하여 상고심보다는 하급심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 대법원에 대법관 아닌 법관을 두는 것이나 고등법원 상고부에 상고법관을 두는 것은 법관의 새로운 층위를 만들어 법관 사이의 승진 개념을 부활시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아니함

## ■ 방안의 개관<sup>2)</sup>

### ● 상고 유형의 세분화

- 현행 상고이유의 체계를 수정하여(현행 상고이유의 체계와 각 상고이유의 의미는 **별지 5** 참조), 상고 사건을 ① 법이 정한 사건 유형 또는 상고이유의 경우 반드시 대법원의 본안 심리를 필요로 하는 ‘**법정상고 사건**’, ② 법정상고 사건 이외의 사건으로서 대법원의 본안 심리를 받기 위해 일정한 심사가 필요한 ‘**심사상고 사건**’ 으로 유형화함
  - 그동안 상고 유형을 ‘필수심리 사건’, ‘권리상고 사건’, ‘심사상고 사건’으로 삼분(三分)하여 연구·검토하였으나, 상고 유형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절차가 복잡하다는 비판 등이 제기됨
  - 이에 따라 ‘필수심리 사건’과 ‘권리상고 사건’을 합쳐서 반드시 대법원의 본안

2) 이하의 세부 쟁점 중 ‘고등법원 상고부와 상고심사제를 결합하는 방안’에서의 민사 등 사건 상고심사제 논의와 공통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해당 방안을 지지하는 2인의 위원들도 의견을 개진함



심리를 필요로 하는 사건 유형을 ‘법정상고 사건’이라 칭하고, 이와 ‘심사상고 사건’으로 이분(二分)하여 상고 유형을 검토하기로 함

## ● 각 사건의 범위

### - [쟁점 1] 각 사건의 범위에 있어 민사 등 분야와 형사 분야의 구분 필요성

- [대체로 의견이 일치된 사항] 상고 유형의 구체적 범위와 기준 등을 설정함에 있어서 민사 등 분야(가사, 행정, 특허 등 포함, 이하 같음)를 형사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엄격히 규율하여야 함
- 이에 대하여는, 양자를 구분하여 규율할 필요가 없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음

### - ① 법정상고 사건의 의미 및 범위

- 법정상고 사건은, ① 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유형의 사건 또는 ② 원심판결에 재판의 신뢰, 당사자의 권리 보호 또는 법적 질서의 유지 등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법이 정한 상고이유가 있는 사건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은 반드시 본안 심리를 해야 함

### ■ [쟁점 2] 민사 등 분야에서의 법정상고 사건의 범위

- [대체로 의견이 일치된 부분] 원심판결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반드시 본안 심리를 하도록 함 ⇨ ① 민소법 제424조의 절대적 상고이유 중 1 내지 5호, ② 재심사유, ③ 법률 등의 헌법위반여부 판단 부당(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이유 1호), ④ 명령 등의 법률위반여부 판단 부당(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이유 1호 / 심리속행사유 2호), ⑤ 판례위반(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이유 2호 / 심리속행사유 3호), ⑥ 판례부재/판례변경 필요(심리속행사유 4호)
- [일부 추가 의견] ① 2심제 사건(특허, 공정거래사건 등)에 대한 상고 사건을 추가하는 의견, ② 원심판결에 헌법위반/헌법해석부당(심리속행사유 1호)의 상고사유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의견 등이 있었음

### ■ [쟁점 3] 형사 분야에서의 법정상고 사건의 범위

- [대체로 의견이 일치된 부분] ① 사형, 무기 또는 10년(2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현저한 양형부당의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② 현행 형소법상 절대적 상고 이유(형의 폐지·변경 및 사면 + 재심사유), ③ 민사 등 분야에서의 법정상고 사건 유형 중 ③부터 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대법원이 반드시 본안 심리를 하도록 함

- [일부 추가 의견] ① 당선무효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상고 사건을 추가하는 의견, ② 원심판결에 헌법위반/헌법해석부당의 상고사유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의견 등이 있었음

#### - ② 심사상고 사건의 의미 및 범위

- 법정상고 사건 이외의 사건으로서 당사자의 상고 신청에 대하여 대법원이 본격적인 본안 심리에 들어갈지 여부를 심사하는 사건

#### ■ [쟁점 4] 심사상고 기준

- [대체로 의견이 일치된 부분] 상고 신청 대상 사건이 다음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도록 함 ⇨ ① 법령 해석·적용의 통일이 필요한 경우, ② 법의 형성·발전이 필요한 경우, ③ 공적 이익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④ 법령 해석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근본적인 중요성이 있어 본안 심리가 필요한 경우

- [일부 추가 의견] ①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사회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경우(과거 상고허가제 시행 당시 허가에 의한 상고사건의 과기 기준)를 추가하는 의견, ②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현행 민사사건의 심리속행사유 5호)를 추가하는 의견<sup>3)</sup> 등이 있었음

#### ● 재판 절차의 구체적 모습

- 현행 심리불속행 제도는 수정하거나 폐지함
- [쟁점 5] 상고장(또는 상고심사신청서) 및 상고이유서(또는 상고심사신청이유서) 제출 법원

3) 이에 대하여, ‘법령 해석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와 개념상 중첩되는 측면이 있고 구분이 불명확하여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이견이 있음



- **[다수의견(6인)]** 상고장(또는 상고심사신청서)뿐만 아니라 상고이유서(또는 상고심사신청이유서)까지 모두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원심법원에 대하여 법정 제출기간 준수 여부 등에 관한 형식적 심사권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 지지
- **[소수의견(3인)]** 현행과 같이 상고장(또는 상고심사신청서)은 원심법원에, 상고이유서(또는 상고심사신청이유서)는 대법원에 각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지지

#### - 대법원의 본안 전 심사 절차

- **① 법정상고 사건 해당 여부에 대한 형식적 심사**
  - 당사자가 법정상고 사건이 아님이 명백함에도 법정상고 사건이라고 주장하거나 법정상고 사건인지 여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sup>4)</sup>가 있을 수 있음
  - 판단 기준: 이는 본안 판단이 아니므로 상고인의 주장 자체로 명백히 해당하지 않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함
- **② 심사상고 신청에 대한 심사**
  - 심사상고라는 유형 분류 본래의 취지상 상고심 본안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심사는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음
- **[쟁점 6] ‘본안 전’ 심사의 주체**
  - **[다수의견(6인)]:**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 지지
  - **[소수의견(3인)]** 대법원에 대법관 아닌 법관을 두어 대법관과 함께 이원적 재판부를 구성하고, 그 재판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 지지
- **[쟁점 7] 상고이유의 적법성 등 ‘본안 전’ 심사 자료의 범위**
  - **[다수의견(7인)]:** 상고장(또는 상고심사신청서), 상고이유서(또는 상고심사신청이유서) 및 하급심 판결문 등 한정된 자료만을 보고 심사하는 방안 지지
  - **[소수의견(2인)]:** 상고 유형별로 구분하여 법정상고 사건은 소송기록 전체를

4) 예컨대, 2009도13411 판결 사안과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어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징역 2년 6월 및 징역 4년의 각 형이 선고된 경우 이를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현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된 사건’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보고 심사하나, 심사상고 사건은 우선 한정된 자료만을 보고 심사하는 방안 지지

#### - 본안 심사 절차

- 본안심판은 현재와 같이 전원합의체와 소부가 담당
- 다만, 전원합의체 중심으로 운영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고, 소부에서는 원심판결을 변경(파기)하는 재판은 할 수 없도록 함

### 나. ② 고등법원 상고부와 상고심사제를 혼합하는 방안(민·형사 구분)

#### ⇨ 위원 11명 중 2명 찬성

##### ■ 주요 내용

- 민·형사 상고절차를 구분하여 ① 형사사건 상고절차는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두어 대법원과 고등법원 상고부가 상고사건을 분담하여 처리하고, ② 민사 등 사건 상고절차는 다수의견과 같이 상고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고등법원 상고부와 상고심사제를 혼합하는 방안

##### ■ 위 방안을 지지한 위원들의 주된 논거

- 위 방안을 지지한 위원(2인): 심정희, 윤원상 위원(가나다 順)
-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의 법령 해석·적용의 통일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절충적 방안임
- 상고심사제가 원칙적인 모습일 수 있으나 상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국민 일반 대상 인식조사 결과 고등법원 상고부 등 방안에 관한 선호도가 가장 높고(소송무경험자 그룹 제외), 형사사건 경험자가 민사사건 경험자보다 상고심의 권리구제 기능을 더 강조하면서 3심 보장에 대한 요청이 높음



- 더불어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상고제도의 최종적 지향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결과도 적절히 접목시킬 필요가 있는데,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결과 상고심사제에 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음(변호사 그룹 제외)

## ▣ 방안의 개관

- 형사사건은 고등법원 상고부를, 민사 등 사건에는 상고심사제를 각 도입
  - 현행 심리불속행 제도는 폐지함
  - 형사사건은 선고형 등 일응의 기준을 두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그 외의 사건은 고등법원 상고부에서 담당
  - 민사 등 사건은 앞서 본 ‘상고심사제 방안’ 과 같이 법정 사건 유형 또는 상고이유에 해당되는 사건은 대법원에서 곧바로 본안 심리하고 그 외의 사건은 상고심사신청을 한 후 상고심사가 받아들여질 경우에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 형사사건 ⇨ 고등법원 상고부 방안
  - 고등법원 상고부의 설치, 운영 등
    - 각 고등법원은 형사부를 ‘형사상고부’와 ‘형사상고부가 아닌 부’로 구성
    - 고등법원 상고부는 4명의 법관으로 구성하고, 대등재판부로 운영
  - 고등법원 상고부 법관(이하 ‘상고법관’)에 관한 사항
    - 상고법관은 대법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임용자격을 강화하고 상고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함
    - 상고법관의 임용자격은 판사(10년 이상 경력)와 대법관(20년 이상 경력) 사이에 해당하는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함이 적절함
    - 상고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는 판사가 아닌 재야 법조인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음
    - 상고법관 임명 절차
      - 현직 판사: 상고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 → 대법관회의의 동의 → 대



### 법원장의 임명

- 재야 법조인: 상고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 →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 (판사임명절차) → 대법관회의의 동의 → 대법원장의 임명

- 임기는 5년, 재보임 가능

### - 심판권의 분류

#### ■ 대법원의 심판권

- 신체의 자유와 관련되거나 정치적인 사건을 담당 ⇨ 선고형이 사형·징역·금고형인 형사사건, 당선무효가 되는 선거 관련 형사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다만 구체적인 선고형 기준은 추가 논의가 필요함)

#### ■ 고등법원 상고부의 심판권

- 대법원 심판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형사사건

### - 고등법원 상고부 판결 전 이송제도

#### ■ 고등법원 상고부의 이송결정

- ① 대법원 관례와 다른 의견을 가지는 때, ② 관련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어서 관례저축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③ 법령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대법원에서 심판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함
- 고등법원 상고부 소송 계속 중 언제든지 이송결정이 가능

#### ■ 대법원의 이송명령

- ① 법령 해석·적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거나 ② 사안의 사회·경제적 중대성 등에 비추어 대법원에서 심판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함
- 고등법원 상고부 재판의 절차적 안정을 위해 고등법원 상고부가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만 가능

### - 고등법원 상고부 판결 후 특별상고제도



- 당사자는 고등법원 상고부 판결에 대하여 ① 헌법 위반, ② 법령해석의 부당 또는 ③ 대법원과의 판례 불일치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상고를 할 수 있음
- 이는 당사자의 권리구제 측면이 아닌 대법원의 기능적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판결확정 차단효과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대법원 결정으로 형집행 정지가 가능함

#### - 대법원의 운영

- 전원합의체와 소부를 두는 것은 현행과 같음. 다만 현행과 달리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소부는 현행보다 제한적인 역할만을 담당하도록 함

#### ● 민사 등 사건 ⇨ 상고심사제

- 대법원은 모든 민사 등 사건의 최종심을 담당하나, 상고심사제를 도입함 ⇨ 세부 내용은 위 ‘상고심사제’ 방안에서 본 내용 참조

### 다. ③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대법관 증원 포함) 방안 ⇨ 위원 11명 중 2명 찬성

#### ▣ 주요 내용

- 대법관을 증원함과 더불어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대법관 아닌 법관(이하 ‘대법원 판사’)을 두어 대법원의 사건 처리 역량을 양적으로 증대시키는 방안
- 현행 심리불속행 제도는 유지하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경우 실질적 이유를 간략히 기재하도록 개선함

#### ▣ 위 방안을 지지한 위원들의 주된 논거

- 위 방안을 지지한 위원(2인): 류성룡, 민홍기 위원(가나다 順)
- 상고심 재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



## 이고 효과적인 방안임

- 사실심 심리가 충분히 충실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대법원이 오랜 기간 형성해온 재판 실무관행, 즉 개별 상고사건에 있어서의 분쟁해결(당사자 권리구제) 기능을 포기하기는 어려움
-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에 관하여는 헌법적 근거[헌법 제102조 제2항(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도 있음
- 상고심사제 방안에 관하여, 기존의 상고허가제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에 관한 깊은 성찰이 있었는지 의문이 있고 상고심사제가 예정하고 있는 사건 유형의 세분화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너무 복잡한 측면이 있으며, 대법원에의 상고의 기회를 줄이는 방식의 개선 방안은 국민에 대한 설득이 어려울 것임. 고등법원 상고부와 상고심사제를 혼합하는 방안 역시 제도가 복잡하여 이해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 **방안의 개관**

- **대법원 규모의 양적 확대 및 심리불속행 제도의 수정·보완**
  - 대법관 6명 및 대법원 판사 20명을 증원하여 대법원을 이원적으로 구성하고 전원합의체를 포함한 각 재판부를 ‘사법재판부’와 ‘공법재판부’로 구분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함
  - 심리불속행 제도는 유지·개선 ⇨ 심리속행 사유를 강화하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의 이유를 간략히 기재하되, 판결 이유 기재에 따른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심리속행을 거쳐 도출된 판결과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사이에 ‘대법원 판례’로서의 효력에 차이를 둘 수 있는 방안 검토
- **대법관의 증원: 6명 증원(現 14명 → 20명)**
  - 연간 민사 등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 비율이 약 75%, 형사 상고기각결정 비율이 약 60%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상고사건의 25~30% 정도가 실질적인 본안심리를 거친다고 볼 수 있음 ⇨ 2018년 기준 약 13,830건 정도가 실질심리사건임



- 대법관의 과도한 증원은 전원합의체의 구성·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뿐 아니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하여 사법부가 지나치게 정치화되는 문제가 있음
-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대법원을 이원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대법관 6인을 증원하여 실제 재판업무에 투입되는 대법관을 18인으로 하는 것이 적정함

### ● 대법원 판사 제도의 도입

- 대법원 판사의 적정 수: 20명
  - 대법관 6명을 증원함에 따라 실제 재판업무에 투입되는 대법관이 18명으로 증가 ⇨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대법관재판부 2개의 설치를 전제로 나머지 10명의 대법관 1인당 하나의 이원적 재판부를 구성 ⇨ 10개의 이원적 재판부에 각 2명의 대법원 판사를 둘 경우 총 20명의 대법원 판사가 적정
- 대법원 판사의 신분·자격 등
  - 종래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정도에 준하는 경력을 갖춘 법관 중에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함
  - 전원합의체 및 대법관회의의 구성원이 되지 못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법관에 준하며, 합의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대법관과 동등한 지위를 가짐

### ● 대법원의 기능 및 운영 등

- 다양한 재판부의 구성 및 심리
  - 전원합의체 2개(사법재판부, 공법재판부 / 대법원장 및 각 대법관 9명씩)
  - 대법관재판부 2개(사법재판부, 공법재판부 / 각 대법관 4명씩)
  - 이원적 재판부 10개(사법재판부 5개부, 공법재판부 5개부 / 각 대법관 1명과 대법원 판사 2명으로 구성)



■ 구성방법 도해



- ① 전원합의체의 기능, 조직 및 심리

■ 기능

-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소수의 중요사건을 심층적으로 다루면서 법령해석·적용의 객관적·통일적 기준의 제시를 통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함
- 대법관재판부에서 회부한 사건으로서 종전 판례의 변경, 규범통제 사건 등을 처리함

■ 조직

- 사법(私法)재판부, 공법(公法)재판부 각 1개씩 구성
- 각 전원합의체는 10명으로 구성 ⇨ 대법원장(재판장) + 대법관 9명



## ■ 심리

- 원칙적으로 재판부 구성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원심재판을 변경할 수 없음(법원조직법 제66조)
- 사법재판부와 공법재판부 사이에 공통 쟁점에 관한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같이 대법원장의 요구에 따라 대법관 전원에게 의한 대연합부 판결을 선고하는 방안도 가능
- 대법관 전원의 의견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판결이유에 실시함

## - ② 대법관재판부의 기능, 조직 및 심리

### ■ 기능

- 이원적 재판부에서 회부하는 쟁점있는 중요한 개별 상고사건에 대한 최종 심으로서 분쟁해결(권리구제)기능을 수행함과 아울러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파장력있는 중요 사건들을 사전에 선별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대법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핵심 축(linchpin) 역할을 담당함

### ■ 조직

- 사법(私法)재판부, 공법(公法)재판부 각 1개씩 구성
- 각 대법관재판부는 대법관 4인으로 구성
- 재판장은 대법원 재판경험이 풍부한 선임대법관으로 보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소속 대법관들이 순환하여 재판장을 맡음

### ■ 심리

- 원칙적으로 재판부 구성원의 과반수로 결정(법원조직법 제66조 참조)
- 과반수 의견이 없는 경우 전원합의체로 필요적 회부
- 과반수 의견은 형성되었으나 일부 대법관이 다른 의견을 가진 경우, 재판장은 재판부 구성원과의 협의를 거쳐 전원합의체로 회부할 수 있음(임의적 회부)

## - ③ 이원적 재판부의 기능, 조직 및 심리

### ■ 기능



- 대부분의 개별 상고사건에 있어서 최종심으로서 분쟁해결(권리구제)기능을 담당함

#### ■ 조직

- 사법(私法)재판부, 공법(公法)재판부 각 5개씩 구성
- 대법관 1인(재판장) + 대법원 판사 2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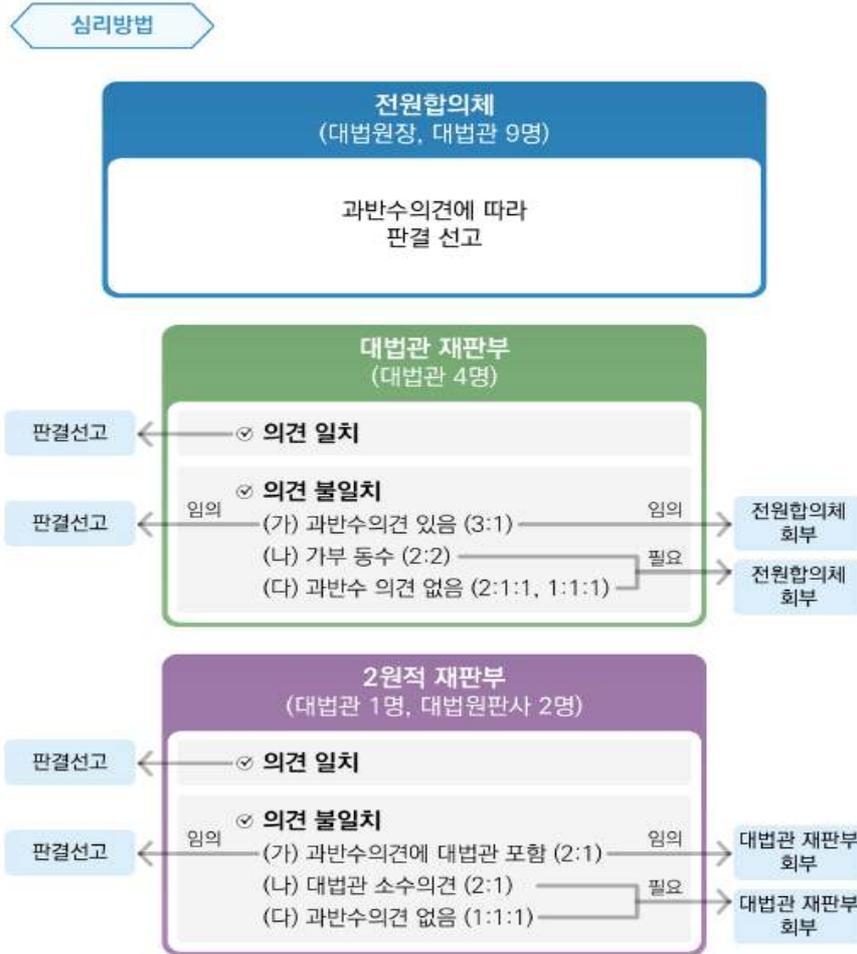
#### ■ 심리

- 원칙적으로 재판부 구성원의 과반수로 결정(법원조직법 제66조 참조). 다만, 대법원 판사가 ‘이원적 재판부’의 구성원이 되고, 합의에 있어서 대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의 주체는 대법관”이며, “대법관의 의사와 다른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수는 없다”는 것이 大原則이므로, 위와 충돌하는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음
- 과반수 의견이 없거나 재판장인 대법관의 의견이 소수의견인 경우에는 대법관재판부로 필요적 회부
- 재판장인 대법관의 의견이 과반수에 포함되어 있으나 대법원 판사 중 일부의 의견이 이와 다른 경우, 재판장인 대법관은 사건의 중요도, 판례 형성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대법관 재판부로 회부할 수 있음(임의적 회부)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심리방법 도해



● 현행 심리불속행 제도의 개선(현행 심리불속행 제도 유지 전제)

- 심리속행 사유 강화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5)에 ‘명백성’ 요건을 보충적으로 부가함으로써 ‘채증법칙 위반’을 주장하는 상고사건을 적절히 통제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필요적 이유 기재

- 현행법상 판결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고,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형식적 기재에 그침 ⇨ 심리불속행에 관한 실질적 이유를 간략히 기재할 수 있도록 제

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 도 개선

- 다만,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이유를 기재함에 따른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심리속행을 거쳐 도출된 판결과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사이에 ‘대법원 판례(선례)’로서의 효력에 차이를 두도록 함

### -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및 구술변론의 활성화

-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및 민사 국선대리 제도 도입
- 전원합의체 사건은 반드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구술변론

### ● 규범통제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효력 강화

- 현행 헌법은 국회 및 정부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분담시키고 있음
- 대법원 재판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위 헌법 취지를 반영하여 국회 및 정부에 대한 견제 역량 또한 증대가 기대됨 ⇨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임을 선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효력을 위헌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과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

## 3. [보론] 구체적 개선 방안의 내용과 무관하게 의견이 합일된 사항

- ▣ 헌법이 정한 최고법원으로서의 대법원의 기능, 현재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 국민의 상고심에 대한 기대 등을 종합할 때, 현재의 상고제도는 조속하게 개선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 또한 상고심 제도 개선과 함께 사실심의 충실화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하여 재판당사자가 상고를 하지 않고도 재판 결과에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 대법원 재판은 전원합의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상고제도의 개선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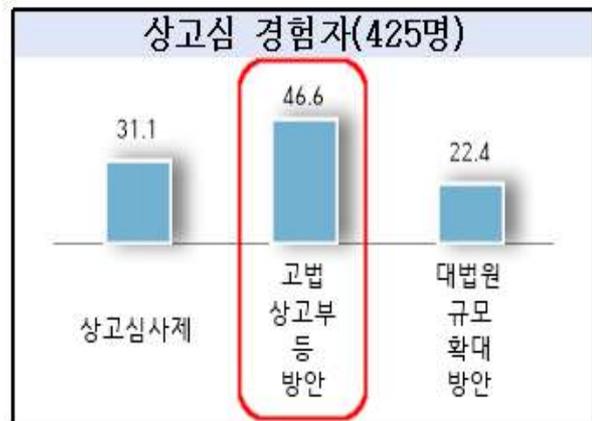
[별지 1]

## 국민 일반 및 법률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결과

▣ 일반 국민 조사 결과(가장 선호하는 방안)

		상고심사제 방안	고법 상고부 등 방안	대법원의 규모 확대 방안	
전체		33.9%	44.2%	21.9%	
소송 경험	경험 없음	42.1%	37.3%	20.6%	
	있음	전체	32.1%	45.8%	22.1%
		상고심 경험자	31.1%	46.6%	22.4%

(단위: %)





▣ 법률전문가 조사 결과(가장 선호하는 방안)

		상고심사제 방안	고법 상고부 등 방안	대법원의 규모 확대 방안
전체 응답자		55.4%	16.1%	28.5%
직역	판사	74.5%	12.0%	13.5%
	검사	47.0%	19.3%	33.7%
	변호사	19.9%	24.8%	55.4%
	법학교수	43.3%	15.6%	41.1%
각 직역별 응답자 수가 동일하다 고 가정할 경우의 환산 수치		46.17%	17.92%	35.9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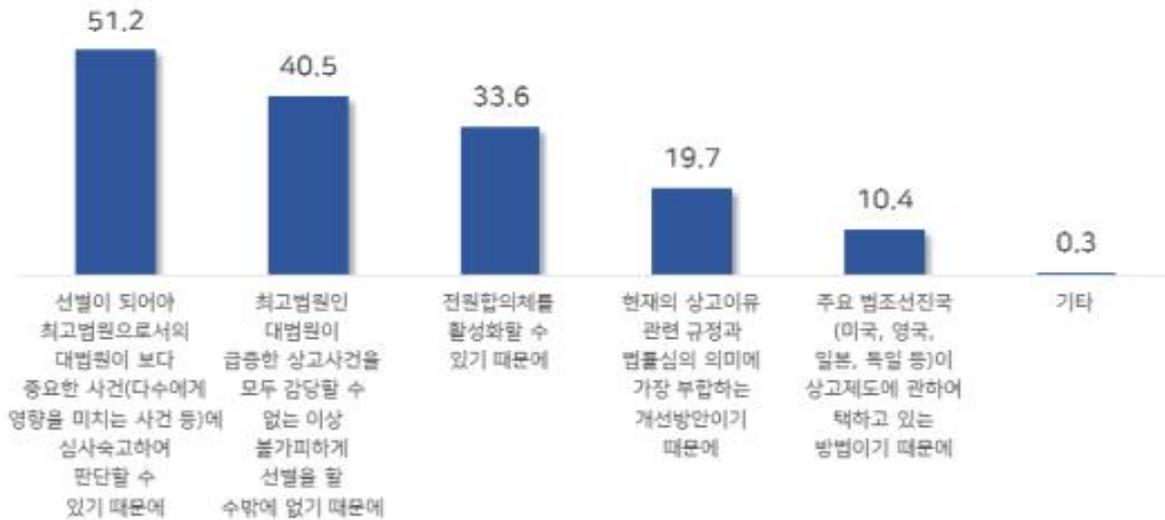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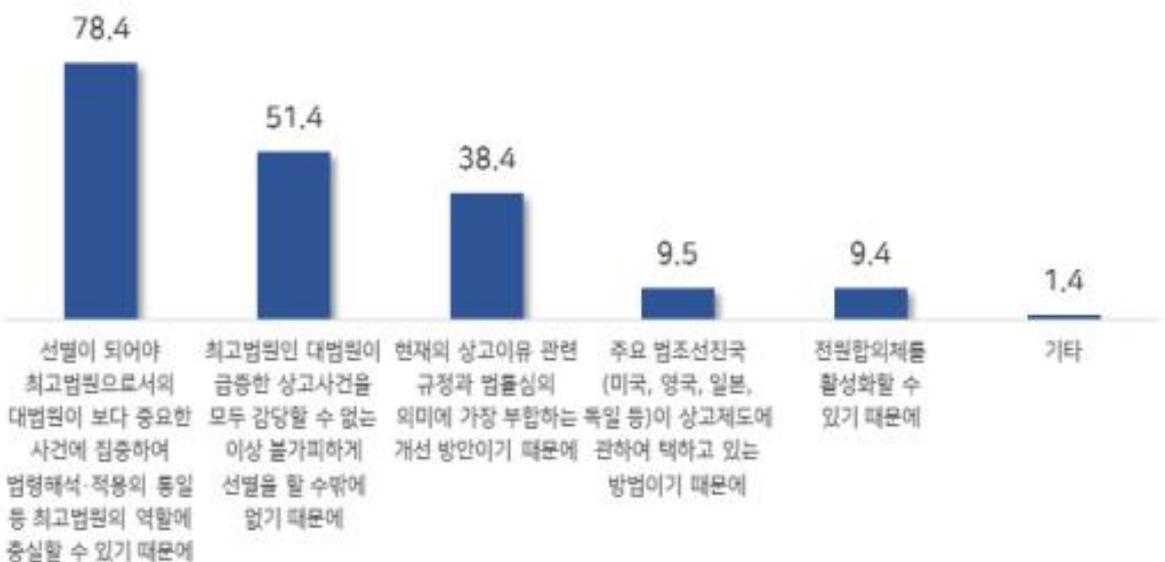
## ☐ 주요 질문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 상고심사제에 **동의하는** 이유(상고심사제에 동의한다고 선택한 응답자에게 재차 질문, 복수응답)

### - 일반 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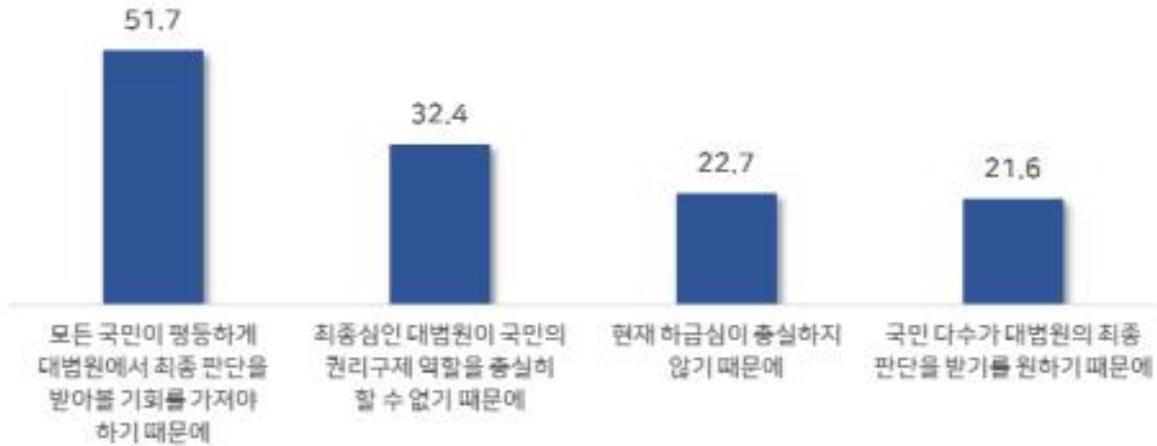
### - 법률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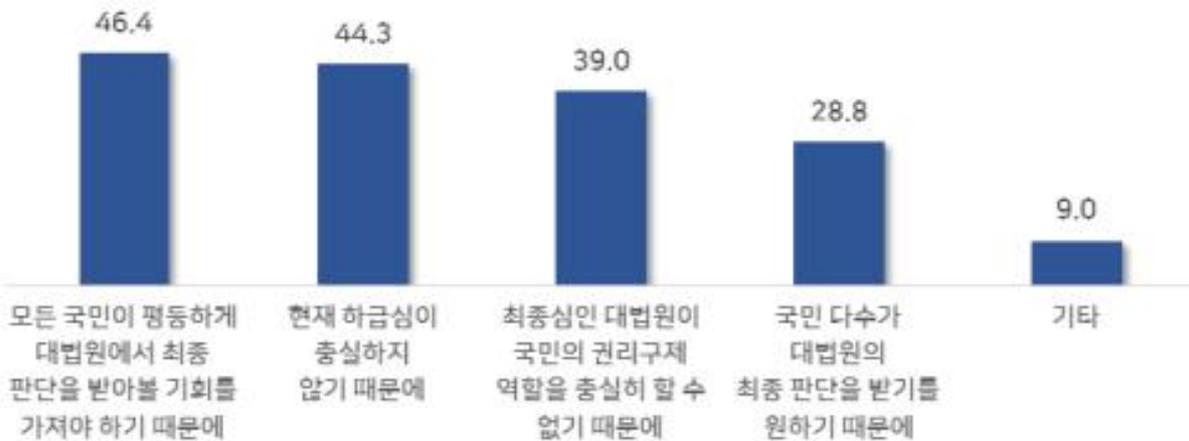


- 상고심사제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상고심사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택한 응답자에게 재차 질문, 복수응답)

- 일반 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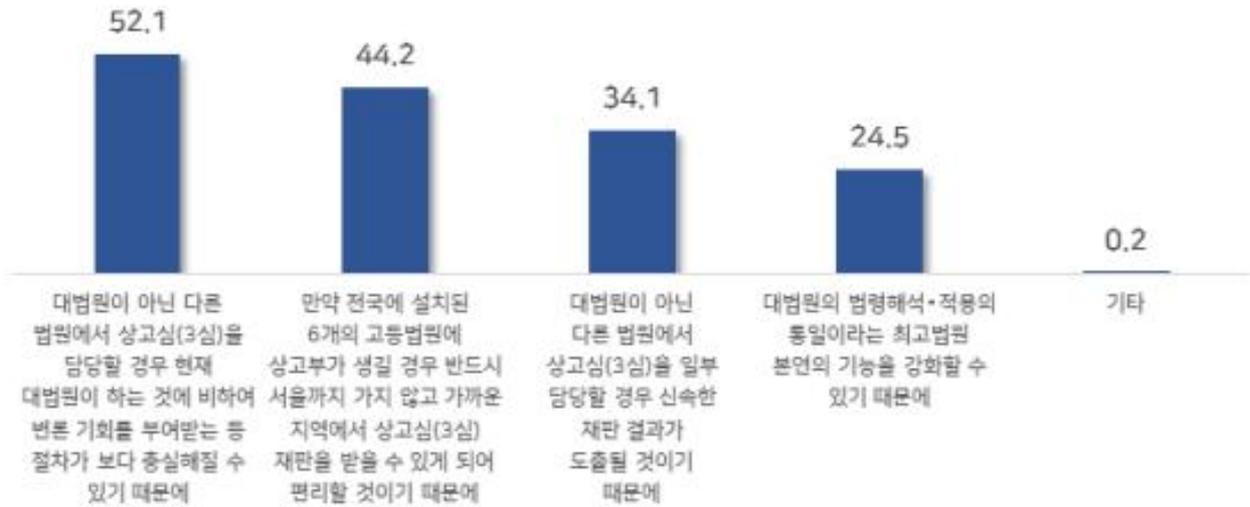
- 법률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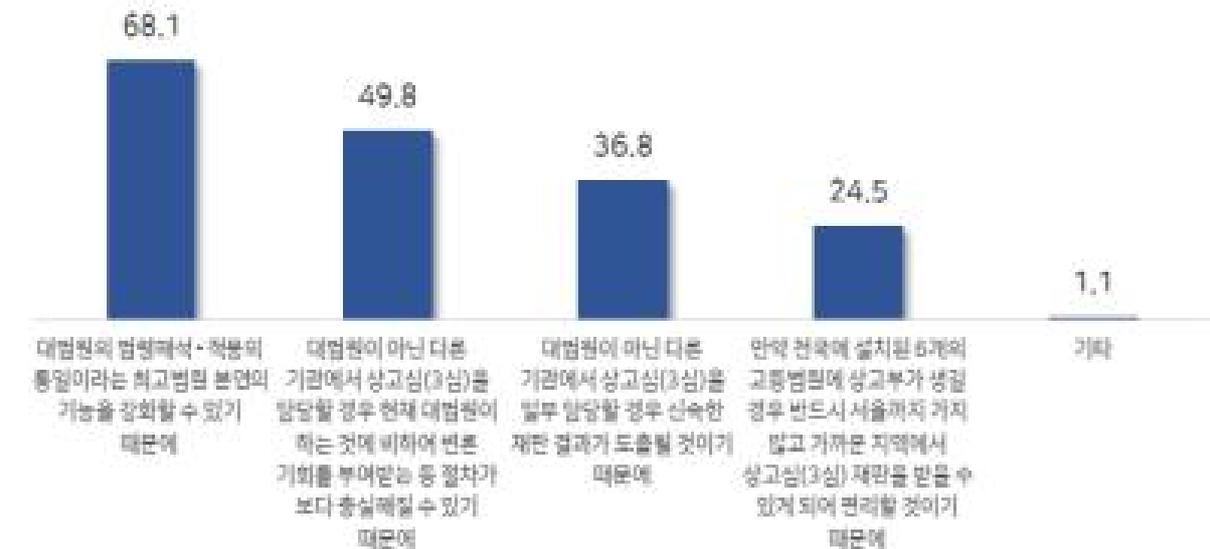


● 고등법원 상고부 등 방안에 동의하는 이유(고등법원 상고부 등 방안에 동의한다고 선택한 응답자에게 재차 질문, 복수응답)

- 일반 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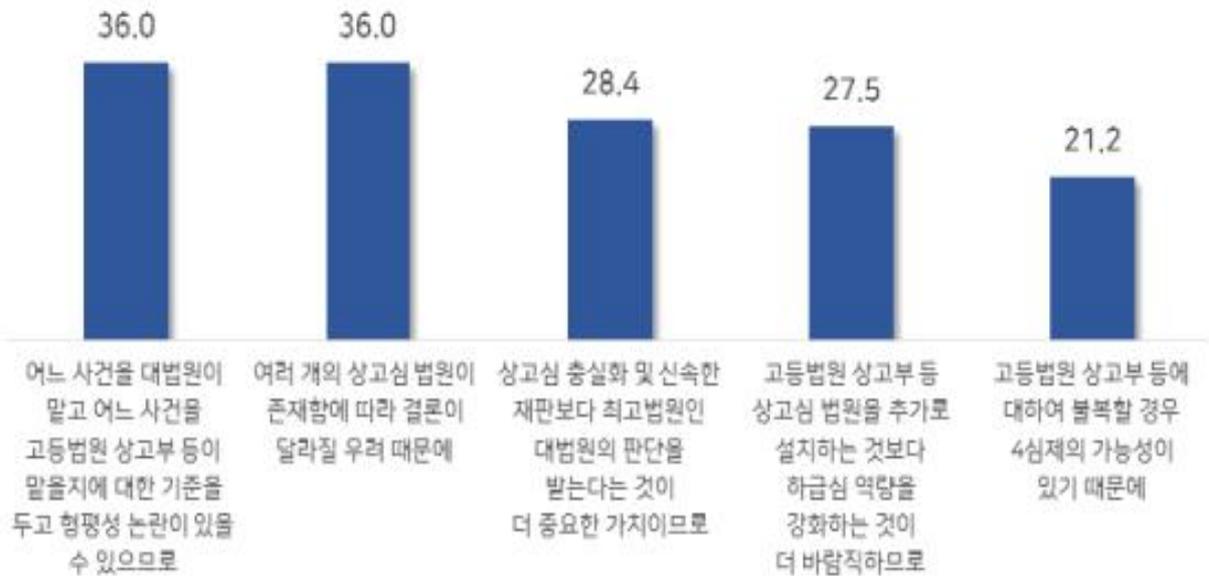
- 법률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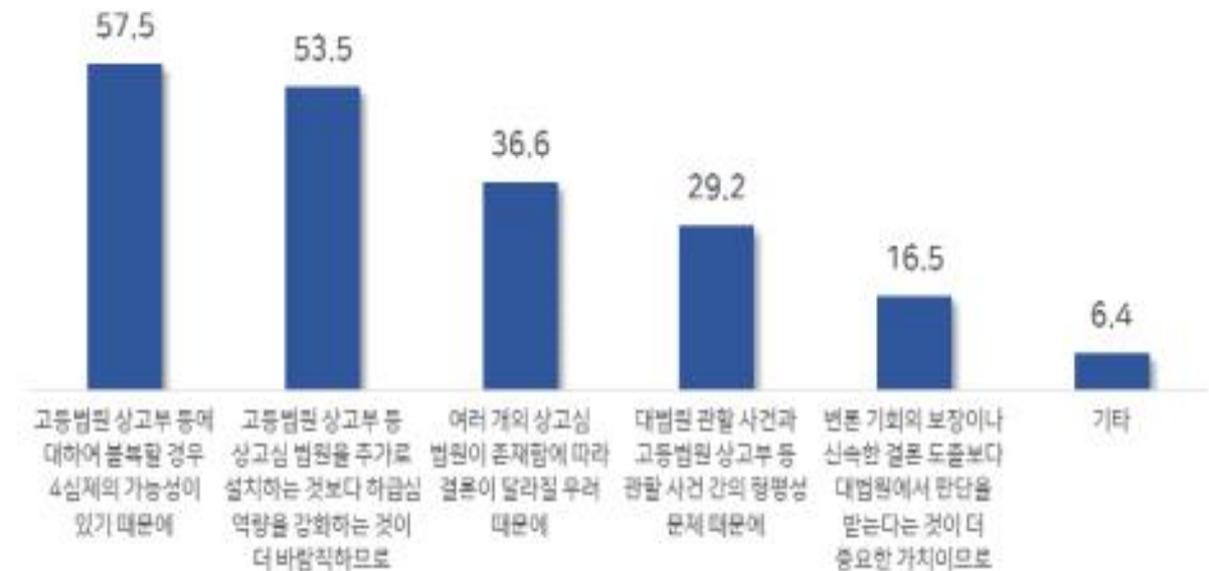


● 고등법원 상고부 등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고등법원 상고부 등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택한 응답자에게 재차 질문, 복수응답)

- 일반 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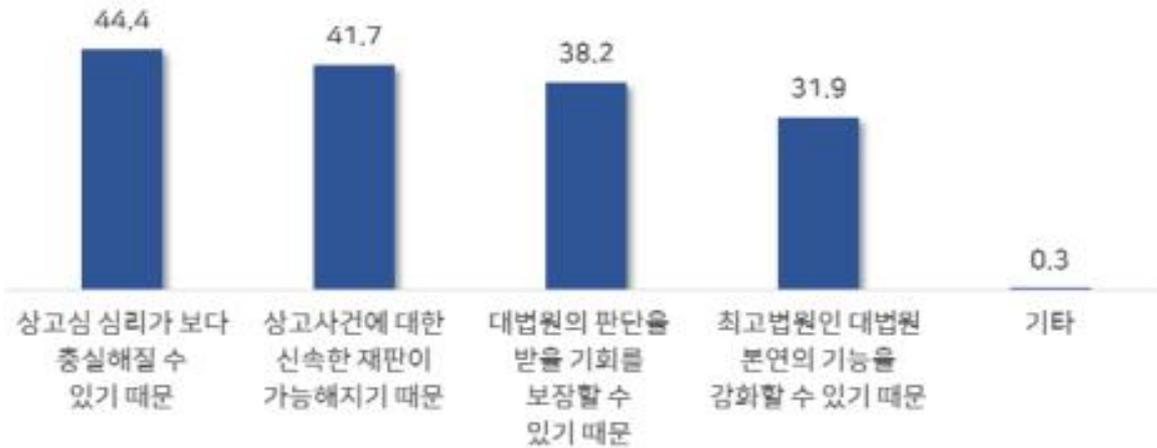
- 법률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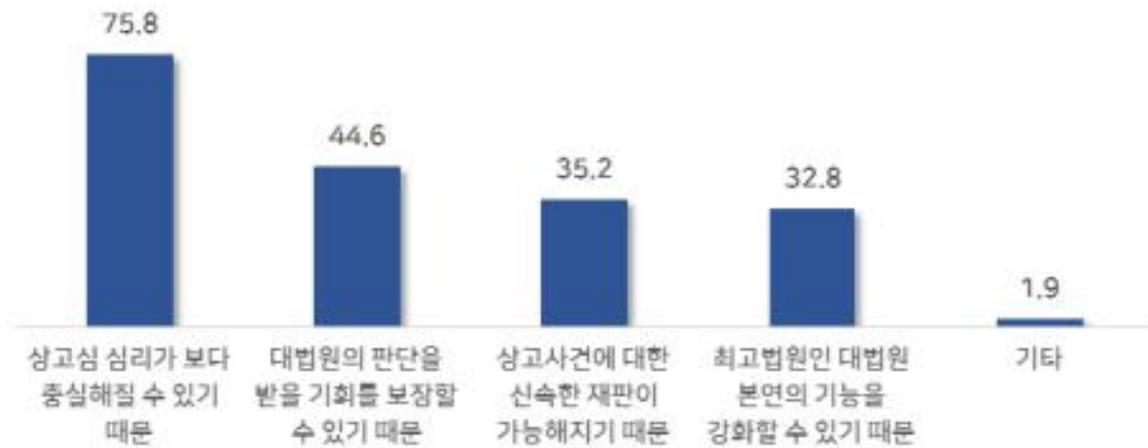


- 대법원 규모 확대 방안에 동의하는 이유(대법원 규모 확대 방안에 동의한다고 선택한 응답자에게 재차 질문, 복수응답)

- 일반 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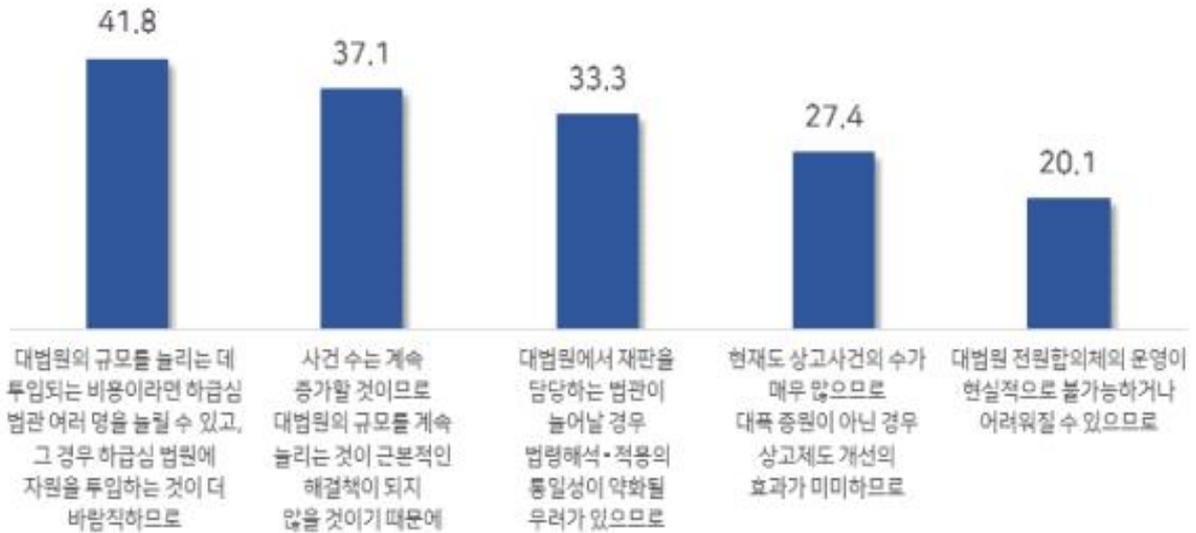
- 법률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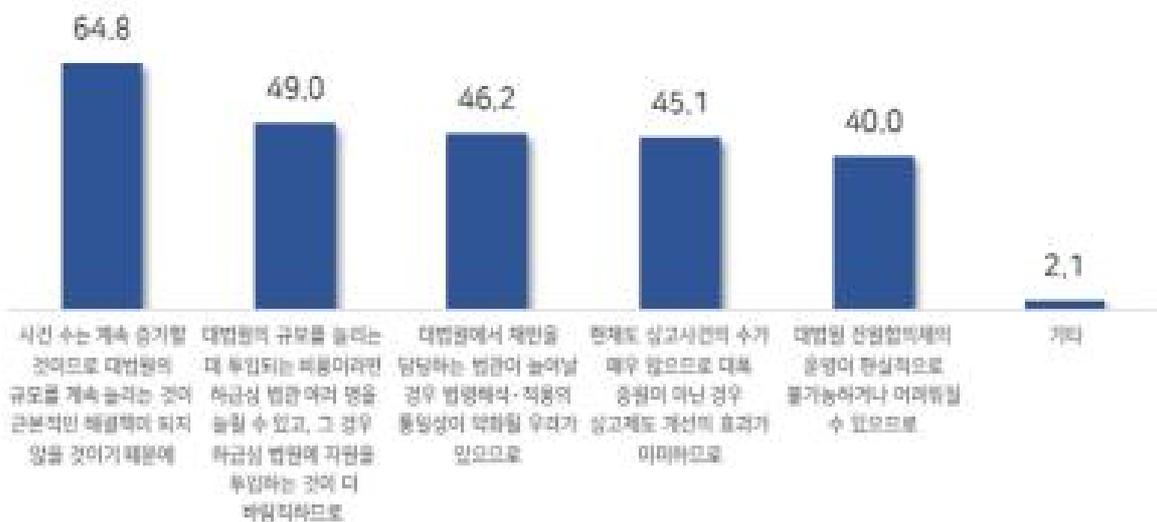


● 대법원 규모 확대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대법원 규모 확대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택한 응답자에게 재차 질문, 복수응답)

- 일반 국민



- 법률전문가





## [별지 2]

#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대법원 주최 토론회

## 1. 인사말씀, 축사, 환영사 등

-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종엽 대한변협 협회장, 이현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 2. 주제발표

- 제1주제: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노력의 경과

- 박노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발표

-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그동안의 우리나라 상고제도의 변천 경위, 상고제도 개선을 위하여 기존에 추진된 각종 방안, 2020년 실시한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등에 관하여 발표

- 제2주제: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방안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논의를 중심으로-

- 이인호 위원, ‘상고심사제 방안’ 발표
- 심정희 위원, ‘고등법원 상고부와 상고심사제를 결합하는 방안’ 발표
- 민홍기 위원,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대법관 증원 포함) 방안’ 발표

## 3. 지정토론

- 하상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 상고심사제 방안에 대체로 동의함을 전제로 하여 각 개선방안의 장·단점에 관한 지정토론 실시

- 김종우 대전지방법검찰청 부장검사



- 상고제도 개선의 전제요건으로서의 하급심 충실화 및 하급심 판결 존중의 필요성 등에 관한 지정토론 실시

#### ▣ 김관기 변호사

- 하급심 충실화와 함께 상고심으로서의 대법원의 자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지정토론 실시

#### ▣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 최고법원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점과 투명성 제고 필요성 등에 관한 지정토론 실시

#### ▣ 성창익 변호사

- 여러 개선방안 중 대법관 증원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지정토론 실시

## 4. 종합토론(Web 질문 포함)

#### ▣ 좌장(권오곤 한국법학원장), Zoom 프로그램 채팅 및 YouTube 실시간 채팅을 통한 온라인 의견 소개

- 하급심 판결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상고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는 의견, 전관예우가 재판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켜 상고제도 개선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 대법원 소부를 대법관 3인으로 구성한다면 좀 더 신속히 재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 독립된 기관에서 양 당사자와의 조율을 통하여 쟁점을 추출하고 이를 상고심법원에 제공해주는 방안을 제안하는 의견 등 소개

#### ▣ Zoom 프로그램에 접속한 온라인 참석자의 의견 제시

- 심리불속행 제도의 장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고배심제도를 제안하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음



## 5. 채팅 등을 통하여 제시된 각종 의견

### ▣ YouTube 실시간 채팅 주요 내용(시간 순)

토론진행경과	주요 의견내용
<p>인사말씀 등 (시작 ~ 49:30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좋은 토론 기대함</li> <li>✓ 상고법원 누구의 이익인지? 법원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상고제도 아닌지?</li> <li>✓ 배심제부터 도입할 필요 있음. 사실판단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판사가 하는 것이 사법독재가 아닌가? 국민에게 사실판단의 권한을 반납할 것</li> <li>✓ 대법원의 판사들이 의롭게 재판할 수 있기를 희망함. 어떤 정치적인 간섭이나 색깔에 의해 재판의 결과가 뒤바뀌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함</li> <li>✓ 헌법을 개선하지 않는 한 대법원 내에 상고만을 담당하는 부서를 따로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함</li> <li>✓ 대한민국 사법제도(1심, 상고 등 모두 포함)는 이미 매우 훌륭하게 잡혀진 체계임</li> <li>✓ 대법관 한 명당 수천 건을 1년마다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차라리 상고법원과 대법원을 분리하여 사안에 따라 대법원은 법률 해석을, 상고법원은 피해자 구제와 하급심 판단 바로잡음을 담당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li> <li>✓ 상고의 존재 이유가 형량을 깎아주는 데에 있지 않았으면 함</li> <li>✓ 보여주기 식이라도 이 토론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음</li> <li>✓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상고심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li> <li>✓ 1심, 2심에서 유사하게 나온 판결이 대법원에만 가면 정치적으로 오염되어 상반된 판결이 나오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대법원이 너무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아닌지?</li> <li>✓ 이런 유익한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 계기가 되길</li> <li>✓ 상고제도 개선은 오래 전부터 나왔던 말임. 대법원 일이 너무 많아서 상고법원을 만들자고 오래 전부터 건의되었던 것으로 앎.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음</li> <li>✓ 대법원에서 반성해야 할 점: 1. 동일/유사범죄에 있어서 남성에게만 형량을 가중하고 여성에게는 감경해주는 판결을 내리는 점, 2. 성범죄에 있어서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들먹이고 여</li> </ul>



토론진행경과	주요 의견내용
	<p>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판단하는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상고제도가 억울한 시민들에게 오히려 재판 과정을 이어가는 동안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li> </ul>
<p>제1주제 발표 ( ~ 1:12:30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불속행 기각이나 상고허가제 등은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이 많으니 사건 수를 줄이기 위해 역지로 만드는 것 아닌가? 이는 3심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함. 따라서 대법관 수를 대폭 증원하고 모든 국민들의 3심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함</li> <li>✓ 꼭 재판을 통해 밝혀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속아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함. 기각함이 마땅한 사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정치적 판단을 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필요한 사건에는 수십 번 공판을 거치는 재판의 형평성 문제부터 개선되어야 함</li> <li>✓ 대법관을 늘려서 민사와 형사로 구분하는 것이 좋을 듯함</li> <li>✓ 대법원 재판 제도는 별개로 하더라도, 더 급한 사항은 배심원 제도의 도입임</li> <li>✓ 이렇게 일반인도 참여하여 볼 수 있는 토론이 있다는 것이 참신하고 좋은 시도 같음</li> <li>✓ 심리불속행 기각을 축소하기를 원함. 대법원에까지 읍소하는 데에는 억울한 면이 있기 때문임. 최소한 심리불속행 기각의 경우 판결문이라도 쓰기를 원함</li> <li>✓ 대법관 14명을 고집할 이유가 없음. 대법관 늘리기로 시작해야 함</li> <li>✓ 학교에서 상고심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하지 않음. 고등학교에서 법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재판에 대해 알기 어려움</li> <li>✓ 배심원제도 조금 늘려야 한다고 생각함</li> <li>✓ 미국식 배심원제도 도입이 타당함</li> <li>✓ 전국에서 사건이 접수되기 때문에 서류의 방대함, 인원 부족 모두 이해함. 다만, 심리불속행 기각이면 왜 그런지 이유라도 제대로 기재해주면 좋겠음</li> <li>✓ 사실관계 판단은 법률 전공자인 판사가 아닌 법원 부속기관을 새로 신설해서 맡겨야 함</li> <li>✓ 대법원 판결이 보다 일반적인 관심기반에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함</li> <li>✓ 현재 법정에서 녹음허가 신청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법정에서 법정녹음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소송당사자에게 열람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면 상소건수가 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예상됨. 다른 말로</li> </ul>



토론진행경과	주요 의견내용
	<p>헌법 제109조를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원 보충을 해야 함</li> </ul>
<p>제2-1주제 발표 ( ~ 1:28:00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법관 직선제 도입이 필요함</li> <li>✓ 직선제의 경우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힘들</li> <li>✓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즉시 폐기하여야 함</li> <li>✓ 2심에서 증거도 제대로 보지 않고 판결을 하니 억울해서 상고심까지 갈 수밖에 없음</li> <li>✓ 상고심사제는 법원 관점에만 치중한 듯함. 상고심사제를 반대함. 중요한 상고사건을 필터링한다는 것은 상고만이 모든 것인 사람들의 법치를 의지하는 관점을 소홀히 하는 것임</li> <li>✓ 무엇을 선택하든 문제가 없을 수는 없음</li> <li>✓ 상고심사제의 기능을 현재 심리불속행 기각제도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li> <li>✓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재판인데, 상식 밖의 판결이 이어질수록 3심까지 거칠 수밖에 없음. 또한 기본적인 판단인데 법의 조력에 있어서 불평등한 문제도 개선되어야 함. 판결문을 쉽게 작성해 공개하고, 당사자가 원할 경우 국민참여 판결심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해보임</li> <li>✓ 제2-1주제 발표 내용에 동의함</li> <li>✓ 상고제한제는 도입 반대함</li> <li>✓ 총량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종류에 따라 매뉴얼대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아니한 사건을 잘 분류해서 사건 처리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타당함</li> <li>✓ 사실관계 다툼은 차치하고, 법률 해석에 관한 분쟁이 생겼기 때문에 재판으로 이어진 것인데, 분쟁과 해석을 나누어보자는 주장은 선뜻 와 닿지 않음</li> <li>✓ 일반인도 판단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하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오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함. 그렇지 않고 상고를 제한하면 억울한 사건들이 많아질 것임</li> <li>✓ 법리가 일관되지 않고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번복할수록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릴 뿐임</li> <li>✓ 총량으로 제한할 경우 비슷한 사건으로 누구는 상고를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li> <li>✓ 총량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음. 하급심을 대폭 강화하여야 함</li> <li>✓ 총량을 제한할 경우, 상고허가를 받지 못한 당사자가 이를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임</li> <li>✓ 인적 자원 증가가 해법이라는 사고방식은 문제가 있음</li> </ul>



토론진행경과	주요 의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관예우부터 없어야 함</li> <li>✓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면 보통 나올 수 있는 의견보다 뭔가 간단하고 저비용이나 획기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음</li> <li>✓ “1심은 사실관계 심리” → “2심은 사실관계 재심리” → “3심은 법리해석” → “4심으로 헌법재판소를 인정, 해석된 법리가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의견을 제안함. 즉 지금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기능을 헌법재판소로 넘기고, 대법원은 대법관 수를 대폭 증원하고, 3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일반 사건을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li> <li>✓ 고소·고발 책임 제도를 도입하여 전체적인 사건 수를 줄이면 상고심 사건 수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함</li> <li>✓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 아니라 속고의 과정임. 사안에 따라 빠르게 판단할지 아닐지를 심사하는 것이 필요함</li> </ul>
제2-2주제 발표 ( ~ 1:43:40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심, 2심에 대한 판결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임. 1심과 2심이 대법원을 가기 위한 다리 역할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니 상고가 많아지는 것임. 대법원에서 1·2심과 상이한 법리 해석 또는 1·2심에서 잘못된 법리 판단을 하였다는 판결이 많아질 때마다 1·2심 판결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음</li> <li>✓ 대법원의 법령 해석·적용의 통일이라는 역할이 잘 이루어진다면 하급심에 대한 법리 해석 기준 또한 제대로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며, 하급심에서 정당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도 그만큼 줄어들 것임</li> <li>✓ 국민들은 원칙적 3심제에 대한 인식이 확고함</li> <li>✓ 대법관을 30인 정도로 하고 소법정을 10개 정도로 하면, 대법관 1인당 사건수도 줄고 상고법원도 필요 없을 듯함</li> <li>✓ 대법관 증원이 아니라면 하급심을 강화해야 함. 법관 증원이 필요함</li> <li>✓ 판례의 통일성 확보 개념이 납득되지 않음. 판례는 데이터 매뉴얼이 아님</li> <li>✓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만, 민사사건의 경우 하급심에서 충실하게 판단 받으면 당사자가 어느 정도 납득한다고 생각함</li> </ul>
제2-3주제 발표 ( ~ 2:01:30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급법원에서 신입법관들이 문제라면, 차라리 하급법원 단독사건은 경험이 풍부한 판사들이 담당하고 상급법원으로 갈수록 배석판사 수를 늘려서 신입법관들이 빨리 많은 경험을 쌓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함</li> <li>✓ 대법관 증원뿐만 아니라 재판연구관 증원도 필요함</li> </ul>



토론진행경과	주요 의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원에 따른 예산 확대가 뒷받침되어야 함</li> <li>✓ 갈수록 사람은 줄고 사건은 늘어 가는데 전체로 따지면 사법부에 들어가는 예산이 적어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됨</li> <li>✓ 재판하는 일과 재판할 사건들을 선별하는 일을 다른 기관에서 분배하여 처리하는 방식은 어떨지?</li> <li>✓ 상고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소액사건의 상고이유 제한에 관해 검토 바람. 소가에 따라 소액사건을 정하고, 소액사건의 경우 소액사건 심판법에서 상고이유를 두 가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돈이 전재산에 해당하여 중요한 사건에 해당함에도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대법원에서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김</li> </ul>
<p style="text-align: center;">휴식 및 지정토론자 소개 ( ~ 2:19: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고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도 나름 괜찮은 것 같음. 대신에 정치적, 형사적 이유가 아닌 재산상 이유나 기타 이유로 소송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상고를 대체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음</li> <li>✓ 불필요한 상고를 필터링하는 기능이 필요할 듯함</li> <li>✓ 상고한다면 법원 외 독립된 기관에서 사전에 이견이 있는 상고의 쟁점을 걸러서 양 당사자와 조율하고 쟁점 위주로 상고심 법원에 제공해주면 시간이 절약될 수 있을 것 같음. 다만, 법원 조직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li> <li>✓ 법원 외 독립기관에서 쟁점을 걸러주자는 견해에 관하여, 좀 더 공평하고 법의 목적에 가까운 선별이 가능할 것이므로 동의함. 다만 현실적으로는 검열의 문제가 있을까봐 우려됨</li> <li>✓ 행정부나 입법부에서도 정책이나 법률 개선 전에 이런 LIVE 방송을 해줬으면 좋겠음</li> <li>✓ 제목은 상고에 관한 토론이지만 인력 부족에 따른 예산 확대에 관한 부가적인 것을 설명해주고 국민들께 예산 충원을 부탁하는 느낌이 듦</li> <li>✓ 이번 토론회와 관련하여 소통하려고 하고 들어보려고 노력한다는 게 참 좋은 변화라고 생각함</li> <li>✓ 여기 있는 발언들이 현재 추진 중인 제도의 개선에 반영되는 방향까지 가는 게 최종 목표일 듯함. 그런 의미에서 오늘 라이브는 의미가 있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지정토론 1 ( ~ 2:29:00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고는 항소심 판단에 대한 불복인데, 항소심 판단을 한 판사가 상고심 판단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면 대부분 부정적으로 쓰지 않을까 우려됨. 즉 상고이유서에는 항소심 판사의 판단 중 잘못된 부분이 기재되는데, 이를 담당판사가 읽었을 때 상고이유서를 작성한 자에 대하여 악감정 등을 가질 수 있는바,</li> </ul>



토론진행경과	주요 의견내용
	<p>당해 재판부의 다른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이는 항소심 판사에게 자기모순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음</li> </ul>
<p>지정토론 2 ( ~ 2:36:30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사사건은 사실판단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제한하는 방법이 상고심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함</li> <li>✓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서 좋은 시간임</li> <li>✓ 형사 항소심 파기율이 40%나 되어 생각보다 매우 높음. 이러면 당연히 3심까지 가고 싶어 할 듯함</li> <li>✓ 국민들 의식은 이미 3심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음</li> <li>✓ 2심에서 패소하면 3심은 무조건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임. 이는 자기만족 때문이라도 그러함</li> <li>✓ 1, 2심에서 충실히 재판을 받는다면 상고심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에 공감함</li> </ul>
<p>지정토론 3 ( ~ 2:48:00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토론자들이 모두 중요한 재판 관계자들임. 각 측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함</li> </ul>
<p>지정토론 4 ( ~ 2:57:00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토론 4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혀준 채팅이 일부 있었음</li> </ul>
<p>지정토론 5 ( ~ 3:12:00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법원이 정말 상고심 개혁에 관심이 있다면 의제화를 위하여 KBS나 MBC의 토론 프로그램 섭외 노력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함</li> <li>✓ 1인당 사건 수를 낮춰야 재판의 질이 올라간다고 생각함</li> </ul>
<p>종합토론 ( ~ 4:12:5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의 장단점은 모두 있으므로, 사법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TV 예능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여론화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유튜브로 쉽고 재미있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li> <li>✓ 요즘같이 정부 정책과 법안이 수시로 바뀌는 때일수록 사법부의 재판 결과가 빨리 나와야 함. 그래야 법률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부에서 이를 빨리 개정할 수 있을 것이고 행정부의 외압으로부터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음. 사법부가 법 해석을 유예할수록 정당한 법 해석에 앞서서 ‘올바르고 상식적인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 것임</li> <li>✓ 국가 전체 예산 512조 원 중 2조 원만이 사법부 예산이라는 점이 충격적이었음</li> <li>✓ 고등법원 상고부 + 법령 해석은 대법원에서 담당하는 안이 가장 알맞음. 미국의 경우 상소심에선 새로 증거를 받지 않고 반복되는</li> </ul>



토론진행경과	주요 의견내용
	<p>경우가 낮음. 그래서 대법관의 업무량도 적음.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1심으로 끝내는, 최대 2심에서 끝내는 문화가 있어야 하지만, 당장은 그게 어려우니 상고법원이 필요함. 2심 법원에서 쟁점을 파악하여 법령 해석을 위해 대법원에 보낼 사건과 의견 대립을 판단하기 위해 상고법원에 보낼 사건을 구분하면 됨</p> <p>✓ 국민들도 2심제까지만 가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인식 개선도 필요함</p>

■ Zoom 프로그램 채팅 주요 내용(시간 순)

토론진행경과	의견내용
1:40:09	<p>제1·2 주제발표를 통해 짧은 시간에 좋은 발표를 들을 수 있었음. 발표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인호 위원의 발표 관련해서 간단한 질문이 있음. 상고허가제가 대법원 본연의 기능(법령해석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함. 다만 상고제도 개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대법원에의 접근성 보장이 목적임.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의 상고허가제에 관한 92년도 결정을 언급하면서 ‘대법원에의 재판받을 권리가 헌법상 권리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표한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고, 오히려 심정희 위원의 발표와 같이 국민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사실상’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대법원에 접근할 권리’를 어떻게 최소한 제한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함. 가령 이인호 위원이 언급한 하급심 재판의 강화를 통한다면 ‘대법원에 접근할 권리’에 대한 제한이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듭. 이인호 위원은 헌법 교수로서 국민의 재판청구권, 구체적으로 ‘대법원에의 접근권’ 제한에 관해서는 그 제한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는지?</p>
2:15:13	<p>국가의 제도를 변경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님. 따라서 현 대법원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법률전문가나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로 이루어진 상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상고배심제를 도입하면 좋을 듯함. 우리나라는 국민참여재판의 경험도 있고, 검찰에서도 기소(수사)심의위원회,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듯이, 대법원의 상고배심제(상고심의위원회) 도입을 제안함</p>
2:23:11	<p>(1) 상고심사제(제한제)의 전제는 하급심 강화라는 점에 관하여 대부분 동의한다고 생각함. 그러나 한편으로 하급심 강화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보론, 장기과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보듯이 상고제도 개선보다 그 규모와 예산 등(예를 들어 대법관의 2배 증원은 수십억의 예산 정도가 들지만, 판사 수의 2배 증원은 천억 대 이상의 예산이 들어감. 예산이 주어진다면 어디에 먼저 쓰겠는가라</p>



토론진행경과	의견내용
	<p>는 논의가 있지만 사실 이는 예산의 규모를 볼 때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음)에서 훨씬 더 어려운 과제임. 이런 현실, 즉 하급심 개선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상고심사제가 먼저 도입된다면, 전제(하급심 강화)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도입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사이에 끼인 국민의 재판청구권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높음(하급심 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실한 재판을 받지 못한 국민이 상고심 재판을 받는 단계에서 막혀버리는 상황. 지금보다 재판청구권이 더욱 축소되고 피해가 발생할 우려). 하급심이 보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고심사제가 먼저 도입될 때 발생하는 피해는 그저 제도 개선의 부수적 피해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실질적 피해임.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법제도 변경은 동의를 얻기 어렵고, 그 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정당성도 제대로 달성될지 의문임(많은 재판청구권자가 제대로 심판도 받지 못하는 토대 위에서 대법원만 몇 개의 사건을 추려서 심리를 한다는 것은 주춧돌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붕만 화려한 것이 아닐까 생각함)</p> <p>정리하면, 상고허가제(제한, 심사제)가 채택가능하고 바람직한 방향일수는 있지만, 2021년 상고제도 도입을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없을 것임. 대안으로 대법관을 대폭 증원해서 하급심의 충실화(법관의 대폭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 의견임)가 어느 정도 도달할 때까지 3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되어야 하며, 하급심의 강화로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된 다음에는 상고제한제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이 때 상고허가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대폭 증원한 대법관이 불필요하게 되지는 않을 것임. 이때야말로 대법원이 9명 이상의 합의체 중심, 토론과 소수의견/다수의견이 실질화되는 원칙적 모습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임). 그러므로 ‘대법관 대폭 증원-동시에 추진되는 하급심 강화(판사 수 증가 포함)-하급심 강화 여건(전제)이 충족된 이후 9명 이상 합의체 중심의 다수의 부에 의한 대법원 본연의 재판으로 정립’의 순서가 되어야 하며, 현재 상황에서 상고허가제가 도입되어서는 안 될 것임</p> <p>(2) 관련해서 이번 특위에서는 대법관 대폭 증원 안은 검토 대상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모든 방안을 논의할 수는 없겠지만, 대법관 대폭 증원 안은 대한변협을 비롯해서 상고제도 개혁의 중요한 방안 중 하나였고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도 있는데, 이번 특위에서 대법관 대폭 증원 안이 중요한 검토 대상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폭넓은 논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음. 오늘</p>



토론진행경과	의견내용
	<p>발제의 3가지 안도 대법관 수를 별로 늘이지 않은 방식인데(이원적 구성도 6명 증원 정도일 뿐임), 이후 특위에서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 있는지?</p> <p>(3) 이원적 구성에 관하여 대법원 인원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전제로 된 것으로 보이는데, 왜 굳이 대법관 증원이 아니라 대법원 판사라는 우려가 있는 직을 신설해야 하는지?(예산의 문제가 핵심이라고 생각되지 않음)</p>
2:54:38	<p>새로 구상되는 제도는 현행 심리불속행제보다 좋은 제도여야 할 것임. 그런데 27년 동안 유지된 현재의 상고제도에는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나름의 장점들이 존재함</p> <p>① 모든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기 때문에 소가와 무관하게 원리와 정책의 측면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리고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점, ② 실제 심리가 전제되므로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상고허가제보다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점, ③ 대법원의 판단이 일원적으로 진행되어 간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점, ④ 일정한 수의 대법관들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게 되고, 동등한 지위에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므로 최고법원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점, ⑤ 신속한 상고심 재판을 통해 원심판결 승소 당사자의 권리를 조기에 확정할 수 있는 점, ⑥ 부의 운영으로 효율성을 보완하고 재판연구관 조직을 통해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점, ⑦ 제도가 단순하고 간명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다는 점 등임</p>



[별지 3]

## 추가 인식조사(법조출입기자,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결과

▣ 각 개선방안에 관한 선호도 조사 결과(가장 선호하는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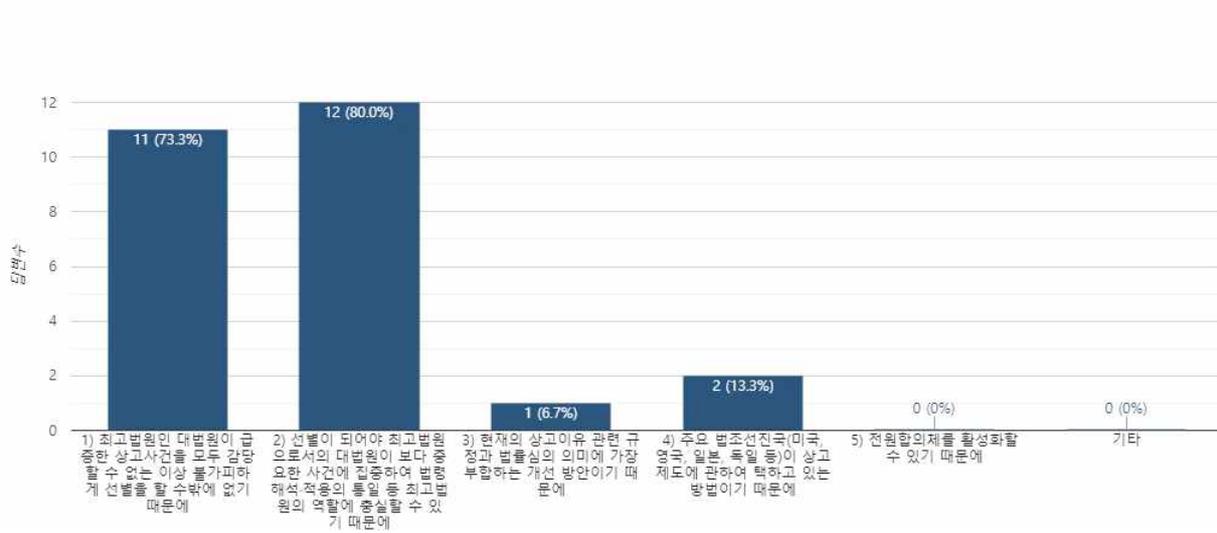
	상고심사제 방안	고법 상고부 등 방안	대법원 규모 확대 방안
법조출입기자(18명 응답)	66.7%	16.7%	16.7%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315명 응답)	24.8%	22.5%	52.7%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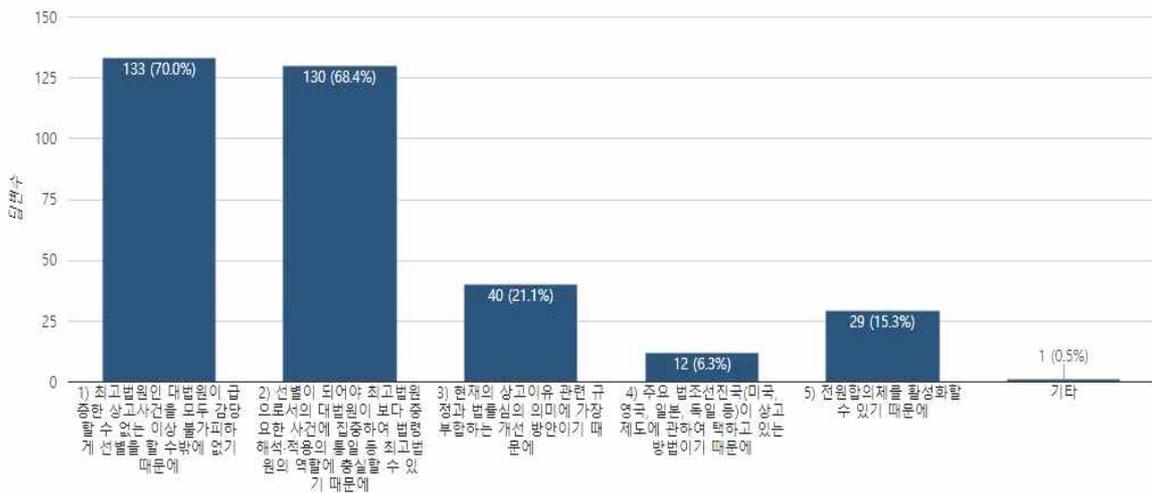
## ▣ 주요 질문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 상고심사제에 **동의하는** 이유(상고심사제에 동의한다고 선택한 응답자에게 재차 질문, 복수응답)

### - 범조출입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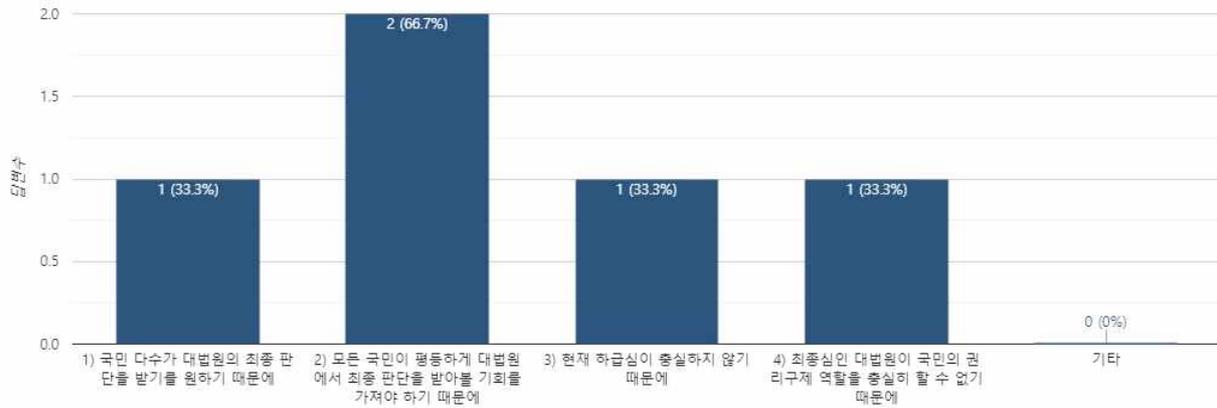
### -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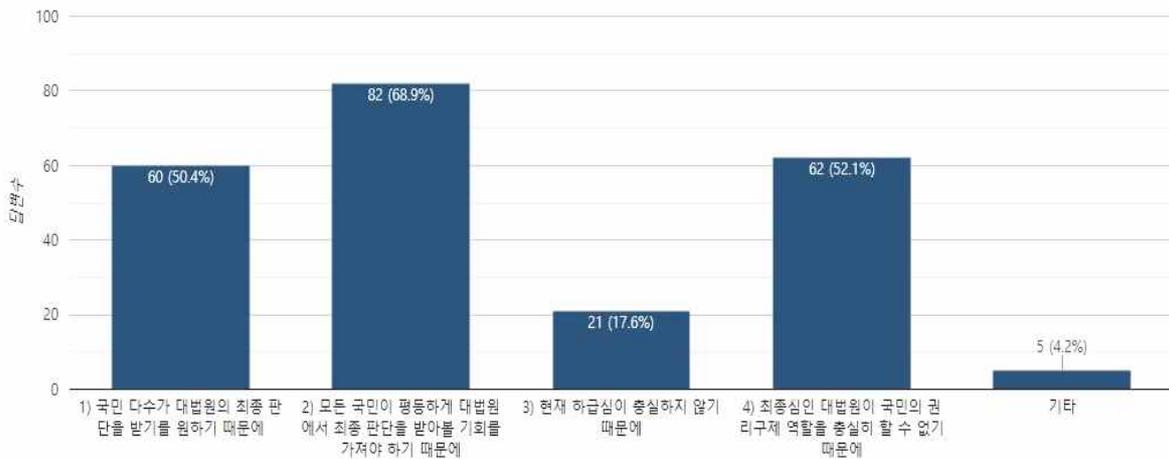


● 상고심사제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상고심사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택한 응답자에게 재차 질문, 복수응답)

- 법조출입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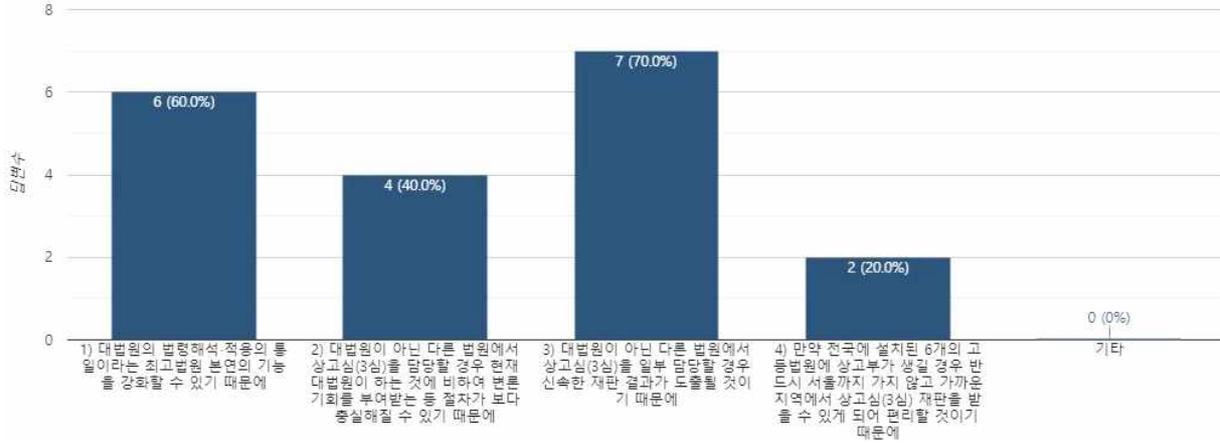
-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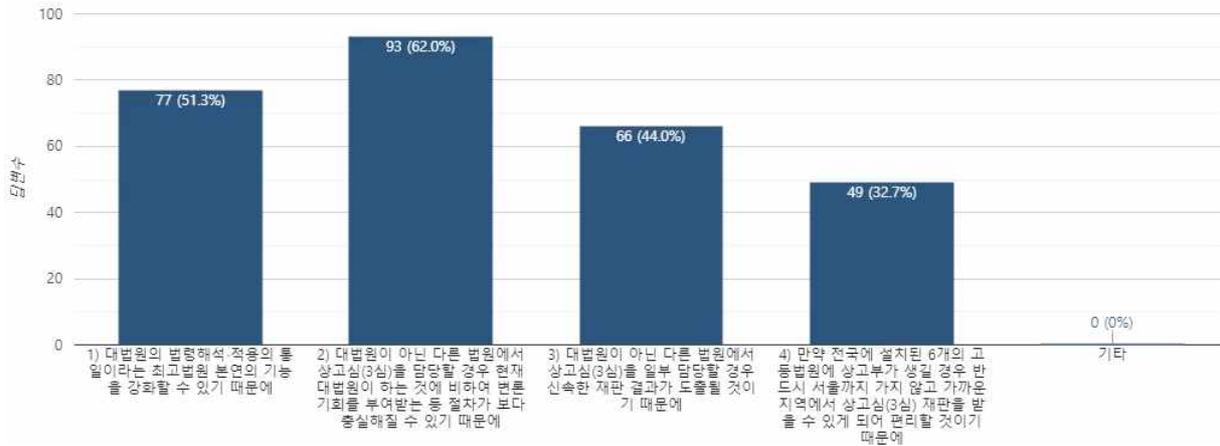


● 고등법원 상고부 등 방안에 동의하는 이유(고등법원 상고부 등 방안에 동의한다고 선택한 응답자에게 재차 질문, 복수응답)

- 범조출입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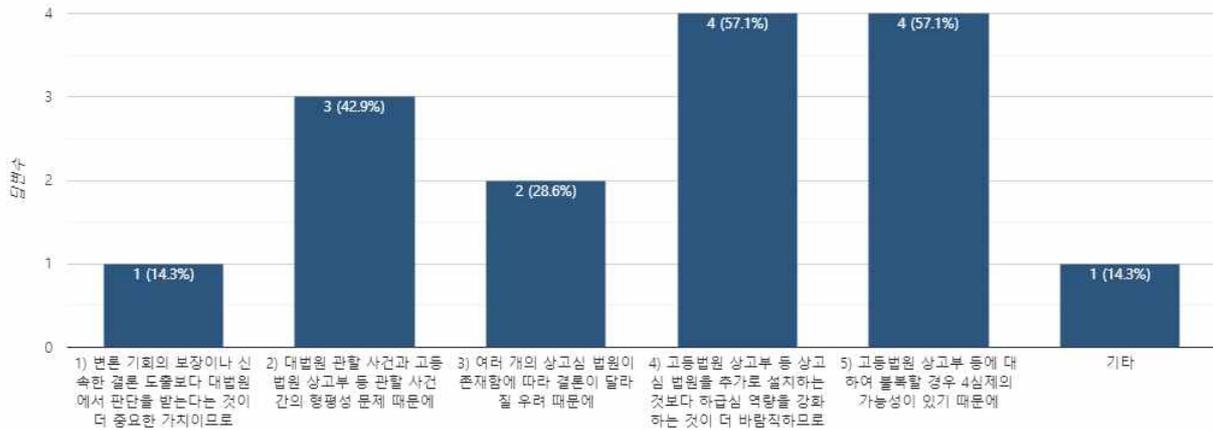
-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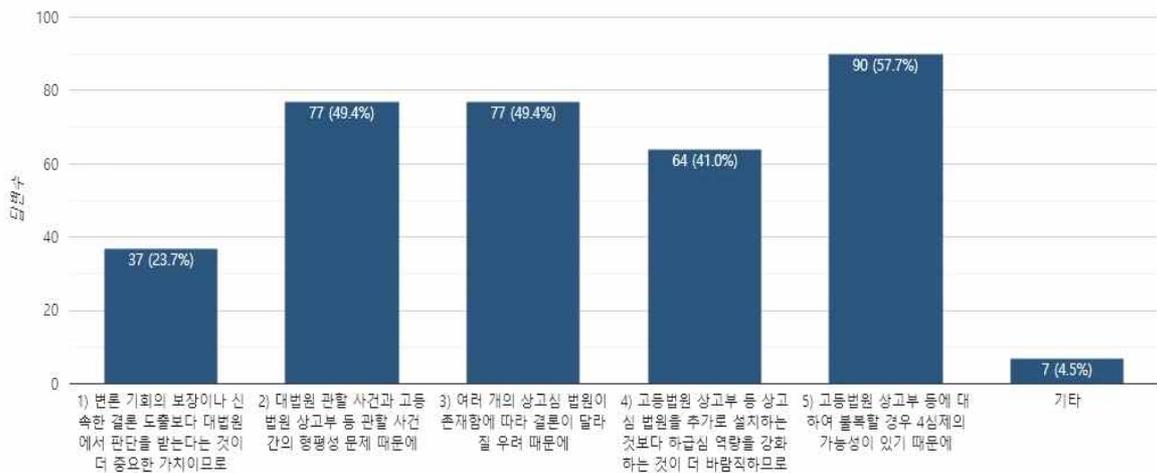


● 고등법원 상고부 등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고등법원 상고부 등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택한 응답자에게 재차 질문, 복수응답)

- 범조출입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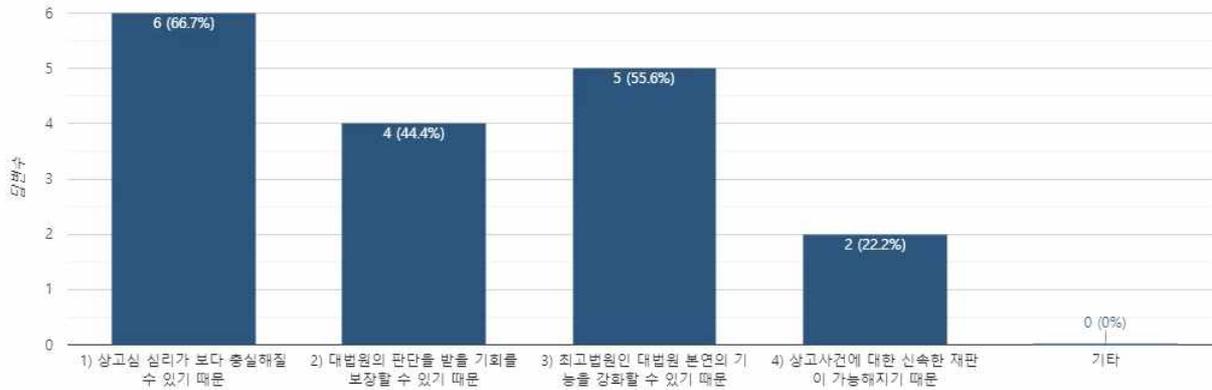
-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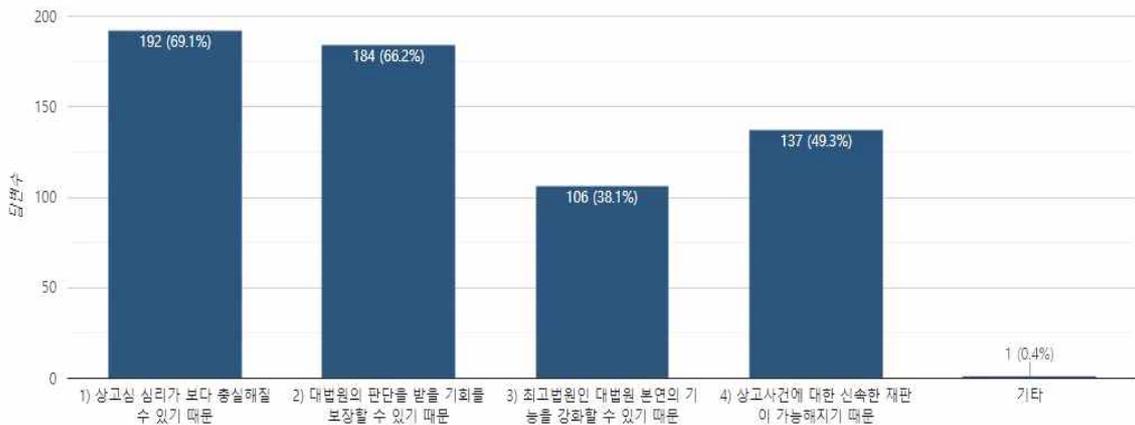


● 대법원 규모 확대 방안에 동의하는 이유(대법원 규모 확대 방안에 동의한다고 선택한 응답자에게 재차 질문, 복수응답)

- 법조출입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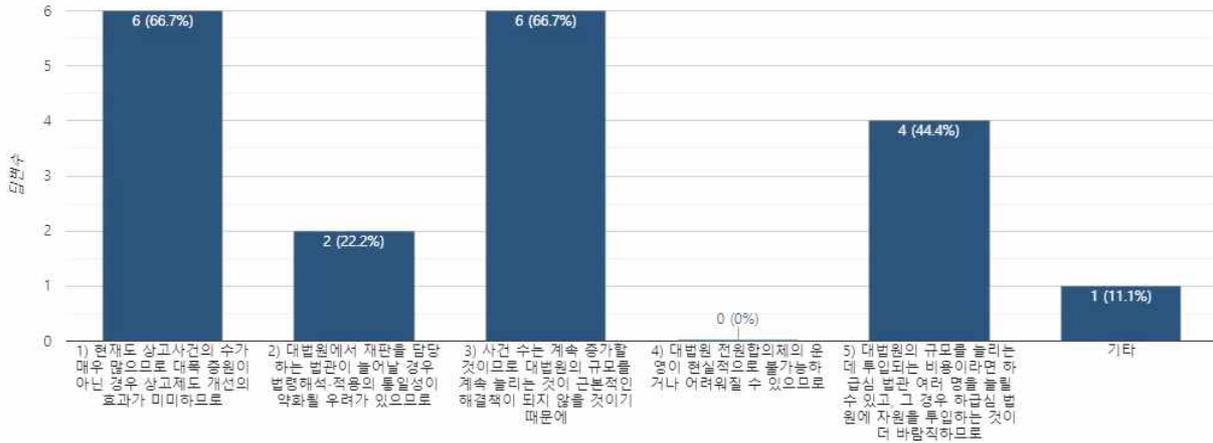


-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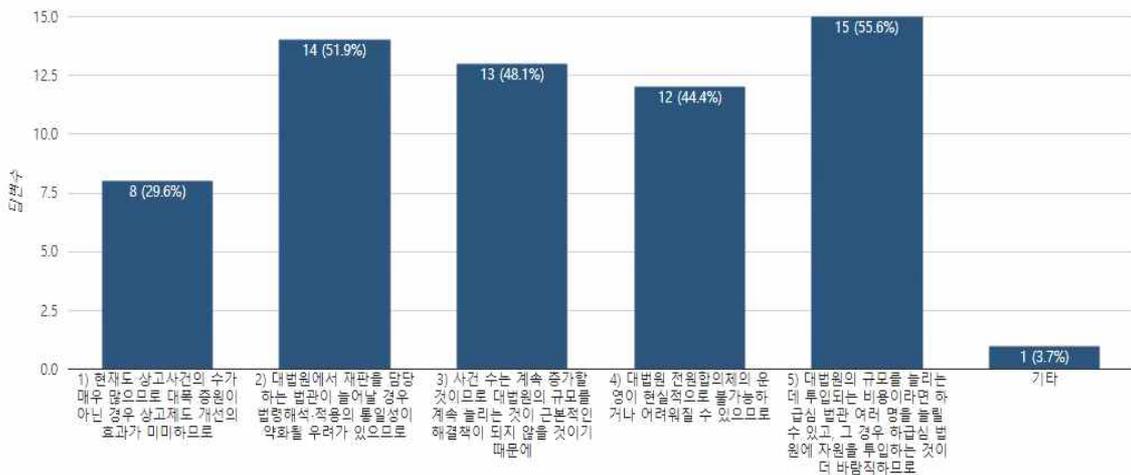


● 대법원 규모 확대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대법원 규모 확대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택한 응답자에게 재차 질문, 복수응답)

- 범조출입기자



-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별지 4]

## 유관기관 등 의견조회 회신 결과

### 1. 의견조회 실시 경과

▣ 의견조회 대상 기관(총 51개 기관, 2021. 7. 7.자 공문 시행)

구분	단체명
유관기관	법무부, 대검찰청, 헌법재판소, 법제처,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한국법학원,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리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사회, 법률 분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바른사회시민회의, 법률소비자연맹
경제 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노동 단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비자 단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
여성 단체 등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교육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변호사 단체	한국여성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舊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법조인협회, 대한법조인협회
기타	한국YMCA, 한국YWCA,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녹색연합,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연맹

▣ 회신 현황(총 12개 기관)

- 대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대한법무사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



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2. 기관별 회신 의견 요약

### 가. 대검찰청(일부 지방검찰청 의견 포함)

#### ▣ 대검찰청

- 현재 논의 중인 상고제도 개선방안 중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방안에 관한 의견
  - 상고심사제의 경우 현 제도하에서도 엄격한 상고이유 심사를 통해 상고기각 결정을 활용하면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상고이유 자체를 강화하는 방안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는 검토 필요함
  - 고법 상고부 등 별도의 법원이 상고사건을 분담하는 것은, 상고심 재판이 여러 법원으로 나뉘지면서 법률 적용의 통일을 해칠 수 있고 대법원의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어긋날 수 있음
  - 대법관 증원이나 대법원 판사 증원 방안은, 대법원 내에서의 토론이나 의견 합치가 어려워질 수 있고, 대법원 내 소부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인하여 법률 적용의 통일을 해할 수 있음
- 상고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 요소 등에 관한 의견
  - 우선 현 제도의 틀 내에서 상고이유를 엄격히 심사하여 상고심 심리가 필요한 사건을 선별함으로써 법률심·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법령 해석의 통일이 필요한 쟁점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만 상고심에서 심리함이 상당함
  - 또한 법원 전체적으로 사실심 심리를 보다 강화하고, 채증법칙 위반 등 사실인정 쟁점을 이유로 한 파기를 자제할 필요 있음

#### ▣ 서울중앙지검

- 현재 논의 중인 상고제도 개선방안 중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방안에 관한 의견



- 고법 상고부 등 별도의 법원을 두고 상고 사건을 분담하여 처리하는 방안은,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과 별도의 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어떤 절차에서 구별할 것인지 불분명하고, 사건관계자들 간의 형평성 논란 등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 대법원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은, 우리 사회에서 대법원이 갖는 의미와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사건 수의 증가를 이유로 대법관 또는 대법원 판사를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효율적인 해결책으로 보이지 아니함
- 결국 형식적 사유에 관한 심사를 강화하거나 상고 이유 자체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대법원이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의 심리에 집중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 법에 정해진 상고이유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과 같은 형식적 사유에 관한 심사를 강화하고, 사실관계의 인정과 관련된 부분은 상고 이유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반영한 상고심사제 방안 시행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상고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 요소 등에 관한 의견
  - 사회가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쟁을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해결하려는 경향이 증가되고 있어 전체 사건 수의 증가 및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재판의 지연, 불충분한 심리 등 재판의 질적 하락을 야기하고 있어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음
  - 이에 1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1심에서 보다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무분별한 상소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형사사건에 있어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된 벌금보다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상고기각의 경우 일정한 금액을 소송비용 명목으로 부과시키는 방법 등)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도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입장에서 적당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 ■ 부산지검

- 현재 논의 중인 상고제도 개선방안 중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방안에 관한 의견
  - 상고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나, 상고심사제와 고법 상고부 설치는 대법관에 의하여 3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상고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 요소 등에 관한 의견
  - 상고심 개선 방안에 대한 법률전문가 대상 조사 결과 관련, 조사 대상 표본이 특정 직역(판사)에 편중되어 있음(전체 표본 중 1/2 이상)
    - 해당 직역(판사)의 경우 법원 조직 구조 변화에 이해관계가 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직역별 응답자 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의 환산 수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법률전문가는 상고심사제를 가장 선호하였다’는 결론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려움
    - 법원 조직 구조, 인사 등에 이해관계가 없는 검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및 법학교수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독일의 경우, ‘일반민형사재판, 행정재판, 재정재판, 노동재판 및 사회재판에 대하여 연방은 최고법원으로서 연방통상(민형사)법원(Bundesgerichtshof),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 연방노동법원 및 연방사회법원을 둔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최고법원의 권한을 여러 개의 사법기관에 분장시키고,
    - 법관대표인사위원회와 법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인사 등 법원행정 분야의 민주적 정당성과 법관의 독립의 균형을 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최고법원의 권한분장은 권력분립의 의미뿐만 아니라, 전문화 및 국민의 재판청구권 실질적 보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상고심 개선방안으로 참고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 대구지검

- 상고제도 개선방안은,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 및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어 하는 기대를 존중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됨. 특정한 제도가



우월하다고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보다는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다음 신중하게 제도를 개선함이 상당

## 나. 대한변호사협회

- 현재 논의 중인 상고제도 개선방안 중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방안에 관한 의견
  - 현재 상고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방안들 중 상고심사제 방안이나 고법 상고부 등 방안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도적 결함이 존재함. 반면 대법원 규모 확대 방안은, 특히 대법관만을 증원하는 방안의 경우 대법관 1인당 업무량을 경감하여 충실한 심리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현재 매우 취약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는 우리나라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판단됨
- 상고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 요소 등에 관한 의견
  - 상고제도 개선 논의의 선결문제로서, 우리나라의 사법구조에 비추어 상고사건의 수가 과연 지나치게 많은 것인지 근본적으로 재고해볼 필요가 있고, 현재 대법관 1인당 실질적인 상고사건 처리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도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기타 상고제도 개선 관련 사항에 관한 의견
  - 나아가,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서 사실심 강화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상고제도를 비롯한 각종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문제에 접근하여야 함

## 다. 대한변리사회

- 현재 논의 중인 상고제도 개선방안 중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방안에 관한 의견
  - 대법원 규모 확대 방안 ⇨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을 늘리는 방안 구체적으로는 ③ 대법관과 대법원판사를 모두 증원하는 방안



- 상고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 요소 등에 관한 의견
  - 전문성 강화: 전문 법원 판사(특히 기술 분야)는 순환인사를 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함

## 라. 대한법무사협회

- 현재 논의 중인 상고제도 개선방안 중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방안에 관한 의견
  - 단기방안: 대법원 규모 확대 방안
  - 중장기방안: 상고법원(고법 상고부) 설치 등 다른 방안
  - 취지
    - 하급심 충실화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상고사건을 줄이는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하는 것이 실효적
    - 사법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먼저 대법관의 숫자를 늘려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이 선행되고, 그래도 한계가 노정될 때 다른 대안에 대한 설득력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됨
- 상고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 요소 등에 관한 의견
  -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 현업에 종사 중인 법무사의 참여가 필요함
  - 취지
    - 법원의 대국민 사법서비스 중 국민의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조력하는 전문적인 법무사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음

## 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현재 논의 중인 상고제도 개선방안 중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방안에 관한 의견
  - 상고심사제와 고등법원 상고부제 등 함께 논의되고 있는 대안들도 각각의 가치와 장점이 있지만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권리구제 실현에 초점을 맞춘다면



---

##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상고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 요소 등에 관한 의견
  - **[국민 입장의 사법개혁]** 법률서비스 문제를 공급자 중심의 시각이 아닌 수요자이자 소비자로서 국민 중심의 시각으로 전환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시작이라 여기며, 그에 따라 국민에게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함. 현재 대법원에서 다뤄야 하는 상고사건이 난이도가 높고 그 수가 방대함에도 이를 적절히 담당할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한계인만큼 이에 대한 논리적인 대안은 ‘사건 수 축소’ 및 ‘담당자 수 증원’ 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사건 수를 축소하는 것은 상고제도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인 재판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옳은 방안이 아님. 대법관 수 증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안은 대법원 내 상고사건에 대한 사건 수를 조절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
  - **[대법관 2-3배 증원]** 상고사건은 1990년부터 2019년까지 5배가 증가했는데 대법관 수는 지금까지 14명(대법원장 포함)으로 동일함. 상고사건 중 부적합한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급격한 제도 변화에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건의 증가만큼 증원 수를 정하는 것이 아닌 2-3배의 증원을 목표로 한 후에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여기서 대법원의 판결은 대법관의 영역이므로 대법관이 아닌 대법원 판사 수는 해당 논의에서 큰 의미가 없을 것임
- 기타 상고제도 개선 관련 사항에 관한 의견
  - **[하급심 강화]** 대법관의 양적 확대와 함께 하급심 강화도 필요함. 지금까지 급증한 상고사건 중 부적합하고 무의미한 사건이 많다는 문제도 제기되는데 이는 하급심에서부터 심리가 충실히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임. 대법관뿐 아니라 일반 법관을 대폭 증원하여 하급심을 강화하는 것도 함께 논의해야 함
  - **[소액사건심판제도 개선]** 2017년부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의 개정에 따라 소액사건의 대상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기존에 단독 사건으로 처리되던 일부 사건이 소액사건으로 편입되어 민사본안 사건 중 약



70%가 소액사건으로 분류됨. 신속성과 경제성에 중점을 둔 나머지 다수의 민사소송에서 헌법상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현재 논의 중인 상고제도 개선방안 중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방안에 관한 의견
  - 대법관 증원과 대법원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는 판사의 증원이 동시에 필요
    - 대법관을 순차적으로 증원하고, 대법원에 재직하는 판사(재판연구관)의 수를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늘려서 업무부담 경감, 충실한 사건 검토와 보고서 작성, 타 주심대법관의 사건 검토(10초 재판 문제 개선)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현재 대법관별 3인인 재판연구관을 6인으로 증원하고 전문분야 재판연구관도 분야 추가, 인원 증원이 필요함
- 상고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 요소 등에 관한 의견
  - 사실상 상고허가제로 기능하고 있고(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음) 사법불신의 한 원인(대법관 출신 변호사 선임 시 심리불속행을 면할 수 있다. 심리불속행의 이유를 모르겠다.)이 되고 있는 심리불속행 제도는 폐지가 필요함
  - 하급심 기능 강화, 신뢰회복, 국민들의 의식 변화 등으로 점차 상고제기 사건 수를 줄어나갈 필요는 있지만, 상고허가제, 고법 상고부와 같은 인위적인 제도를 통해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으려는 일반 국민들의 요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기타 상고제도 개선 관련 사항에 관한 의견
  - 하급심 기능 강화를 위해서라도 노동법원 설치와 노동사건 심리절차 특례를 도입해야 함. 노동위원회 제도는 그대로 두더라도 우선 전문법관으로 구성하는 노동법원부터 설치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예를 들어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 경력법관 임용 시 5대 로펌 재직자의 임용제한이 필요한 반면 공익로펌에서



활동하거나, 공익활동을 한 경우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그런 분들 중에서 일정한 인원 이상을 선발할 필요가 있음. 이는 하급심 재판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고 있고, 법관 임용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청됨

- 주요 도시 법원의 과중한 사건부담을 법관 인원 증원을 통해서 줄여야 함. 법관들도 일과 개인의 삶이 양립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심리를 충실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도 충족되어야 함
- 노동사건 소송비용(인지대) 문제를 개선해야 함. 패소 시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물어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사실상 재판청구권이 제한되고 있음

## 사. 한국성폭력상담소

- 현재 논의 중인 상고제도 개선방안 중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방안에 관한 의견
  -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상고제도 개선과 관련한 연구나 논의가 활발하지는 않았으나, 신속하고도 다수의 대법관들의 다양한 가치와 지향점, 충실한 토의와 숙고 끝에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현재 논의 중인 상고제도 개선 방안 중 대법관 증원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상고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 요소 등에 관한 의견
  - 상고제도 개선 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정의로운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급심을 강화하는 모색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임. 오랜 시간 동안 비용을 부담하며 사건의 법적 진행을 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늘 도움이 되는 선택이 아님에도 절반 이상이 항소를 하고, 상고심까지 진행하는 것은 여전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통념과 이에 근거한 정의롭지 못한 하급심의 판단 때문임
  - 성폭력 관련한 상고심 판례로서 성인지감수성이나 피해자 진술 증명력에 대한 개선된 판결이 상식으로 자리 잡고,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개선과 각급 법원에서의 이에 대한 적용이 일반화된다면 하급심이 강화되고 이는 결국 상고심의 부담을 덜어내는 방안이 될 것임. 이를 위해서도 변화



된 인식을 반영하며 법해석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과 심리를 통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필요함

-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인 기본권을 옹호하는 대법원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단순히 사건 수의 조절이나 상고부 신설 등의 쟁점에 국한되지 않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조용하는 방향이어야 함
- 이에 현행 상고제도의 개선방안에 있어서는 4인 소부가 아닌 최소 9인 정도의 합의체 판결을 위한 대법관 증원이 불가피하고, 이때의 구성은 현재처럼 같은 성별·학교·연령대가 아닌 다양한 성별, 출신 배경, 연령대 및 다양한 가치와 지향을 담은 구성이어야 할 것임

● 기타 상고제도 개선 관련 사항에 관한 의견

- 단체 의견 조회 외, 실제 소송당사자인 성폭력 피해자들의 의견 조회 진행

## 아. 한국소비자연맹

● 현재 논의 중인 상고제도 개선방안 중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방안에 관한 의견

- 기본적으로 상고심사제 방안임

- 상고기각 사유는 개별적으로 적절히 설명되어야 함. 예를 들어 대법원 판사 등의 증원 등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상고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 요소 등에 관한 의견

-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수를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나 질 좋은 재판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 상고 이유 제한의 범위 등의 논의는 법률적인 관점뿐 아니라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기 바람

● 기타 상고제도 개선 관련 사항에 관한 의견



- 대법원으로 몰리는 사건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서는 분쟁의 해결방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필요
- 고분쟁성 사건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하급심의 전문성 강화와 사건의 재판 일정을 줄일 수 있는 방안

## 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현재 논의 중인 상고제도 개선방안 중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방안에 관한 의견
  - 제1안 상고심사제가 가장 바람직
- 상고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 요소 등에 관한 의견
  - 심리불속행과 상고기각으로 종결되는 사건의 비율이 상당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상고심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건이 선별되어야 법률심인 대법원의 효율적인 역할이 가능할 것임. 대법원이 중요 사건에 집중할 여건이 마련되고, 이로 인하여 중요 사건의 신속한 종결이 가능해 질 것임
  -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재판청구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상고심 사건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좁히는 방식으로 상고제도가 변경되어서는 아니 됨
  - 현재의 심리불속행 제도를 폐지하고, 본안 전 심사 절차인 상고심사제로 통일
  - 상고심사제(본안 전 심사)의 주체는 대법원에서 대법관이 아닌 법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이원적 재판부)
  - 본안심사는 현행과 같이 전원합의체와 소부에서 하며, 소부의 본안심판 권한 범위를 현재보다 일부 제한하여 파기재판은 전원합의체에서만 가능하도록 함
  - 상고심사 기준의 명확성 확보를 위한 방안 강구 필요
- 기타 상고제도 개선 관련 사항에 관한 의견
  - 상고심의 재판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대법관 아닌 법관의 증원, 재판연구관 임기 및 인원 증원 등



- 장기적으로는 대법원과 상고심사제의 더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고심에 대한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경제적 이유 등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일반 국민들에 대한 법률구조 범위의 확대도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

## 차. 한국여성변호사회

- 현재 논의 중인 상고제도 개선방안 중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방안에 관한 의견
  - 실질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채 논의만 계속하여 온 상고심 개선제도와 관련된 논의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실심의 강화와 사법신뢰구축이라 할 것임. 하급심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법률분쟁에 대해 충실한 재판을 통해 개별적인 권리구제를 하여야 하며, 이에 더해 실질적으로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아닌 “대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심리하더라도 충분하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이에 대법관 및 대법원 판사의 증원과 아울러 하급심 강화, 그리고 상고심의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즉, 법령해석의 통일 내지 법 형성 기능, 중요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분쟁에 대한 법적 판단 등)을 하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을 함께 추진하여야 함
- 상고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 요소 등에 관한 의견
  - [사실심 강화] 상고 개선 논의 과정에서 상고제도의 논의 또한 중요하지만 하급심을 어떻게 개선하여야 할지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야 함. 하급심법원에서도 최근 나홀로 소송의 증가 등으로 인해 업무가 심각하게 과부하되고 적체 중인바, 하급심에서부터 사건의 성질 혹은 경중에 따라 처리 절차를 다양화하여 업무적체를 해소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대법관의 수를 늘리게 되면 자연스레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도움이 될 것인바, 직역할당제를 통해 법관 뿐 아니라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 대학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두루 대법



관에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대법원의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 사회 각층의 다양한 갈등을 포용하고 해결하는 국민 대통합의 장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기타 상고제도 개선 관련 사항에 관한 의견
  - **[심리불속행 제도의 개선 필요함]** 상고제도 개선에 있어 분쟁의 당사자들(결국, 국민)을 설득하기 위하여, 최소한 상고심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몇 줄이라도 기재된 결정문이 마련되어 상고심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납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임
  - **[법관 평가 반영 시스템 필요함]** 상고제도 개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법관의 업무적 역량 강화 방안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임. 재판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 또한 법관으로서 준수해야 할 가치이고 국민에 봉사하는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므로 이를 지표화 하여 인사시스템에 반영하기를 소망함
  - **[하급심 사건 분담 및 전문성 강화 필요함]** 과부하된 사건의 분담으로 인해 적체되고 있는 하급심 법원의 사건 분담 활성화 필요가 있으며, 건설 등의 전문/특수사건의 경우 지방에서는 전문재판부가 존재하지 않는 곳도 많기 때문에 법리적 판단이 어려워 정확한 판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시행 중인 전문심리위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 하급심의 판단이 구체화되어 하급심 판단의 신뢰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함

## 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현재 논의 중인 상고제도 개선방안 중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방안에 관한 의견
  -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상고제도특위’)의 3가지 상고제도 개선안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움
  - 민변 사법센터는 이원적 구성 없는 대법관 대폭 증원을 통한 상고제도의 개혁안을 제안함
- 상고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 요소 등에 관한 의견



- 상고심의 개선은 사법제도 개혁의 전체적 방향과 조응해야 하며, 상고심 변화가 법원의 계층구조(관료화)를 강화시켜서는 아니 됨
  - 상고심의 강화가 하급심 역량의 침식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전관예우, 후관예우의 문제를 심화시켜서는 아니 됨
  - 과거 폐지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경우 폐지의 원인은 해소되었는지, 해소되지 않았다면 동일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무엇인지 제고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임
  - 상고심 강화를 이유로 재판청구권의 보장이 현재보다 후퇴해서는 안 됨
  - 재판과정에서 토론과 숙의가 가능해야 하며,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함
- 기타 상고제도 개선 관련 사항에 관한 의견
- 대법관 대폭 증원안은 기존의 상고제도 개선 논의에서 유력한 방안으로 제안된 바 있으나, 상고제도특위에서 이 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어떤 상고제도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견조치는 상고제도 특위 활동 초반에 이루어졌어야 함. 상고제도특위 활동으로부터 1년 6개월가량이 지나 위 세 가지 안을 전제로 이뤄지고 있는 의견조치에 대해 유감을 포함
  - 상고제도 개선은 법원 개혁의 큰 흐름과 조응해야 한다는 점, 재판청구권의 실질화를 위한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 관료화 등 법원의 고질적 문제를 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함

## 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현재 논의 중인 상고제도 개선방안 중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방안에 관한 의견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상고심사제, 고법 상고부, 대법원 판사의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법원 규모 확대 방안(대법원의 이원적 구성)에 **반대함**



- 
- 위 안들은 대법관 1인 대비 상고사건수의 과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심’을 제한하거나, 대법원 사건을 줄이거나, 대법관에 의한 재판권을 줄이는 방식임
  - 대법원의 최고법원성, 정책법원성이 그 자체로 독자적 목적이 되거나, 기본권 옹호보다 우선시되어 기본권을 현재보다 제한·악화시킨다면 이를 대법원 개선방안이라고 평가할 수 없음
  - 대법원 사건 심리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서라면 대법관 수를 늘이는 것이 합리적임
  - 상고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 요소 등에 관한 의견
    - 우리 대법원의 구성은 다양성과 거리가 있는데, 이는 소수자 권리의 옹호라는 대법원의 사명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임. 현재 상고제도 개선 논의는 대법관 1인 대비 사건수 과다 문제의 해결에만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임. 상고제도 개선은 보다 폭넓게 접근하고 논의되어야 함
  - 기타 상고제도 개선 관련 사항에 관한 의견
    - 상고제도의 개선과 함께 하급심의 개선도 시급한 사안임. 하급심과 상고심의 개선이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각각의 개선이 병행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 [별지 5]

# 연행 상고이유의 체계 및 각 상고이유의 의미

## 1. 민사 등 사건

### ▣ 개관

- 상고이유는 ① 민사소송법(상대적 상고이유, 절대적 상고이유) 및 ② 소액사건심판법에 규정되어 있고, 심리불속행사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음
-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이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고, 심리속행 기준은 심리를 속행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소액사건과 소액사건이 아닌 사건 모두에 적용됨
- 민사소송법상 상고이유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사이의 관계[주석 민사소송법(VI), 388면 이하]
  - 민사소송법상 상고이유와 심리불속행은 심리범위에 차이가 있음. 즉 민사소송법상 상고이유는 원칙적으로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의 당부까지 심리한 다음 상고이유가 부당하면 상고기각판결을 한다는 것이고, 심리불속행은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의 당부까지는 심리할 필요가 없고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이 열거된 속행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더 이상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하게 되는 것임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관련 통계 - 민사사건** (정확한 통계 분석을 위하여, 다수의 소송을 제기한 특정한 사건은 제외)

	2017			2018			2019		
	상고기각		파기	상고기각		파기	상고기각		파기
	심불 기각	그 외 상고기각		심불 기각	그 외 상고기각		심불 기각	그 외 상고기각	
합의	77.9%	11.0%	6.5%	75.9%	12.0%	7.5%	73.0%	14.0%	7.1%
단독	83.2%	8.5%	4.2%	82.1%	8.7%	4.2%	80.2%	10.3%	4.8%
소액	59.0%	33.7%	3.1%	50.8%	43.4%	2.3%	39.6%	53.8%	3.1%
합계	77.3%	13.6%	4.8%	75.0%	15.4%	5.0%	69.6%	20.3%	5.2%

▣ **민사소송법상 상고이유** ⇨ **절대적 상고이유, (상대적) 상고이유 및 재심사유로 구성됨**

● ① **절대적 상고이유(제424조)**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① 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4.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②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호 ~ 제5호는 의미가 비교적 명확함
- 제6호는 소위 이유불비, 이유모순이라고 부르는 사유
  - 주문의 불명확, 판단과정의 불명확, 주문과 이유의 불일치 등을 의미하는 것임



- 소위 말하는 ‘판단누락’, ‘판단유탈’ 역시 제6호에 포함되나 다른 이유불비와는 달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만 이에 해당한다고 봄(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 등)

● ② (상대적) 상고이유(제423조)

제423조(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해당됨
-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에는 아래와 같이 실체적, 절차적 내용이 모두 포함됨 ⇨ 매우 범위가 넓음(소위 말하는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도 여기에 포함)
- ‘헌법위반’의 의미
  - 헌법의 해석을 그르친 것으로서 법률을 제외하고 명령·규칙이 위헌으로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효하게 보아 심판하였다든가 반대로 합헌이고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효로 전제하여 심판한 것이 포함됨. 실제로는 상고이유로 내세운 주장 중 ‘위헌’ 을 주장하는 것이 매우 많은데(예컨대, 피고의 생활이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금원의 지급을 명하였으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의 이행을 명함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는 것 등), 추상적으로 위헌을 주장하는 데 그치고 어떠한 조항이 어떠한 이유로 헌법의 어떠한 조항에 위반하는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면 위헌위법의 주장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 없음[주석 민사소송법(Ⅵ), 271면 이하]
- ‘법률·명령·규칙 위반’의 의미
  -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성문법으로서의 법률뿐 아니라 법이란 명칭이 아니더라도 법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모든 경우가 이에 포함됨(관습법, 조약도 포함됨). 명령은 형식이 명령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이에 해당되고, 규칙은 명령의 형식을 가지지 않는 그 밖의 모든 입법 형식을 말함(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등)[주석 민사소송법(Ⅵ), 280면 이하]
  - 경험칙 위반이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이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



이 판례임(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1566 판결 등)

- ‘판례’는 법령이 아니므로 ‘판례저촉’은 그 자체로 법령위반은 아니나 (민사소송법상 상고이유에는 불해당.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상 심리속행사유임) 대부분은 원심판결에 ‘법령 해석’의 잘못(기존 판례가 올바른 ‘법령해석’이라는 것을 전제)이 있다는 주장으로 보고 심리하게 되는 것으로서, 기존의 판례에 저촉되더라도 원심판결의 법령해석이 정당한 경우에는 상고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야 함(다만, 법원조직법 제7조에 따라 전원합의체를 통하여 판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함)[주석 민사소송법(VI), 284면 이하]

● [3] 재심사유(제451조)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중급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형사소송법은 상고이유에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민사소송법은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를 상고이유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재심사유가 상고이유에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판례에 의하여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도 상고이유로 인정됨(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1349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5727 판결 등). 만일 재심사유가 상고이유로 되지 아니한다면 판결을 확정시킨 후에 재심을 신청하여야만 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도달하기 때 문[주석 민사소송법(VI), 328면 이하]
- 재심사유 중 1~3호는 절대적 상고이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파기사유가 되나, 나머지 각호의 재심사유를 절대적 상고이유로 취급해야 하는지, 상대적 상고이유로 취급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음(주석 민사소송법(VI), 329면 이하)

#### ■ 소액사건심판법 ⇨ 소액사건에서는 아래 2가지 경우만 상고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 ● 각 사유의 의미

- 제1호: 법률 등의 헌법위반, 명령 등의 법률위반(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 제4조 제1항 제2호와 유사한 의미로 봄)
- 제2호: 판례 위반(실질적으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 제4조 제1항 제3호와 동일)



##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 적용범위: 민사, 가사, 행정(특허법 제9장과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따른 소송 포함)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민사소송법 규정에 우선하므로 민사소송법에 정한 상고이유를 주장하더라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사유가 없으면 심리불속행 가능
- 각 사유의 의미
  - 제1호: 헌법위반, 헌법부당해석(민사소송법 제423조의 ‘헌법위반’ 과 같은 의미로 봄)
  - 제2호: 명령 등의 법률위반(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와 유사한 의미로서 하위법규인 명령·규칙·처분이 상위법규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한 때를 의미)

- 제3호: 관례 위반(실질적으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와 같은 의미로서 ‘관례 위반’ 을 의미한다고 봄)
- 제4호: 관례 부존재 또는 관례 변경 필요
- 제5호: ‘중대한’ 법령위반(중요한 채증법칙 위반, 현저한 경험칙 위반, 현저한 심리미진 등을 포함)
  - [참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는 때’와의 차이
    - ‘중대한 법령위반’ 에는 논리칙, 경험칙 등 채증법칙 위반이 포함되므로 사실인정 과정에 중대한 절차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상고이유에 해당하게 되는 반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는 때’ 에는 사실인정 과정에서의 절차법령 위반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정 논의 시 제4조 제1항 5호의 원안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는 때” 였으나, 사실인정 문제를 다루는 채증법칙 위반 등을 심리속행사유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대한 법령위반” 으로 바뀜(국회 속기록 참조)]
- 제6호: 민사소송법상 절대적 상고이유 제1~5호

## 2. 형사 사건

### ▣ 개관

- 형사소송법상 상고이유가 규정되어 있음
- 형사사건은 심리불속행 제도가 없으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열거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결정’ 으로 상고를 기각함(형사소송법 제380조)

제380조 ②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 관련 통계 - 형사 사건

	2017			2018			2019		
	상고기각		파기	상고기각		파기	상고기각		파기
	결정	판결		결정	판결		결정	판결	
합의	29.1%	56.7%	3.1%	35.9%	49.6%	3.0%	34.0%	53.2%	1.2%
단독	61.9%	23.9%	1.2%	65.4%	20.1%	2.1%	62.6%	23.9%	1.5%
고정	66.9%	31.0%	1.4%	71.1%	26.9%	1.0%	63.9%	34.3%	1.0%
군사 재판	35.6%	47.9%	0.7%	46.1%	43.6%	2.6%	36.4%	57.4%	1.6%
합계	77.3%	13.6%	1.5%	61.9%	26.2%	2.0%	57.7%	31.2%	1.3%

▣ 형사소송법상 상고이유

● ① 상고이유(제383조)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 민사소송법과 달리 ‘절대적 상고이유’ 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 제2, 3호는 절대적 상고이유로 해석되고, 제1, 4호는 상대적 상고이유로 해석됨

- 각 사유의 의미

- 제1호: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령위반(실체법, 절차법 모두 포함)
- 제2호: 형의 폐지, 변경 및 사면
- 제3호: 재심청구 사유
- 제4호: 중대한 사실오인, 현저한 양형부당(각 선고형 10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



● ② 재심청구의 사유(제420조)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 위 각 재심사유는 각 호별로 비교적 의미가 명확함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3. 상고이유 등 정리(재심사유 제외)

#### ▣ 민사 등 사건

1단계: <심리속행 사유(아래 사유 +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 한함)> 판단	
1. 헌법위반 2. 명령 등의 법률위반 3. 판례위반 4. 판례 부재 또는 변경 필요 5. 그 외 <u>중대한</u> 법령위반 6. 민소법상 절대적 상고이유 1~5호	⇨ 각호 사유 불포함 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상고기록 송부 시부터 4개월 이내)
2단계: <민소법상 상고이유> 판단 (소액 아닌 사건)	2단계: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이유> 판단 (소액 사건)
○ <b>절대적 상고이유</b> 1 ~ 5. 명백한 절차위반 6. 이유불비, 이유모순(판단누락 포함)  ○ <b>상대적 상고이유</b>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령위반 (형소법상 상대적 상고이유 1호와 사실상 동일)	1. 법률 등의 헌법위반 + 명령 등의 법률위반 2. 판례위반

#### ▣ 형사사건

1단계: <상고기각 결정 여부 판단>
아래의 법정 상고이유 기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결정으로 상고기각
2단계: <형소법상 상고이유> 판단
○ <b>절대적 상고이유</b> 1. 형의 폐지·변경, 사면 2. 재심청구 사유  ○ <b>상대적 상고이유</b>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령위반(민소법상 상대적 상고이유와 실질 동일) 2. 중대한 사실오인, 현저한 양형부당(각 선고형 10년 이상인 경우)



## ▣ 참고

-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은 상고이유 중 ‘법령위반’의 유형에 포함
- [참고] 사실오인과 채증법칙 관련한 상고이유 비교

구분	민사	형사		
		10년 이상	10년 미만	
사실 오인	중대한 사실오인	×(심불)	상고이유	×
	일반 사실오인	×(심불)	×	×
법령 위반	중대한 채증법칙 위반	상고이유	상고이유	상고이유
	일반 채증법칙 위반	상고이유 (심불)	상고이유	상고이유